

정책보고서 2021-112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384-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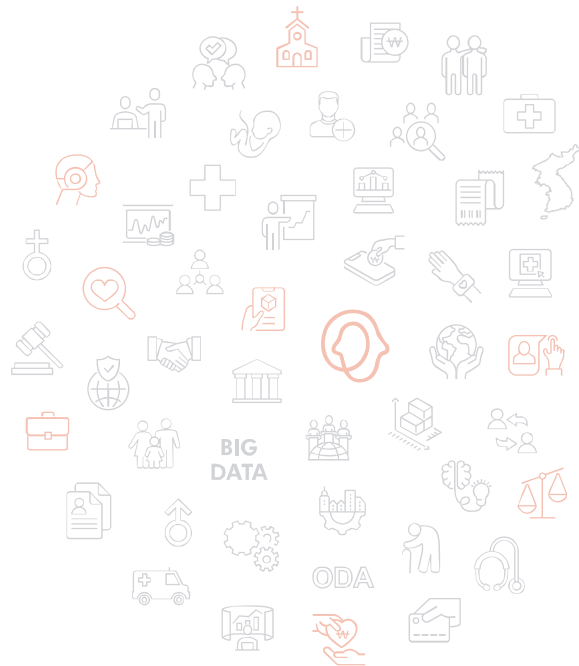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고속자

정소라·여나금·이영숙·강미나·변세일·정영호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속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1. 3. 24.)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가계의 주택금융부채 DB현황	27
제1절 주택관련 통계 현황	29
제2절 주거관련 주요 DB구축 현황	39
제3절 가계대출 관련 통계 및 DB	47
제4절 공적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61
제5절 가계금융부채의 연계 데이터 사례	65
제6절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74
제3장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	7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81
제2절 분석 방법	91
제3절 분석 결과	99
제4장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	113
제1절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115
제2절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119
제3절 주택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128

제4절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추정	141
제5장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153
제1절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155
제2절 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조사 방법	174
참고문헌	179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7
〈요약표 2〉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8
〈요약표 3〉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 8
〈요약표 4〉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 9
〈요약표 5〉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 9
〈요약표 6〉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부채 보유가구 비율	· 10
〈요약표 7〉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 규모	10
〈요약표 8〉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 11
〈요약표 9〉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 11
〈요약표 10〉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 12
〈요약표 11〉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 13
〈요약표 12〉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4
〈요약표 13〉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4
〈요약표 14〉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 15
〈요약표 15〉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 16
〈요약표 16〉 분석결과: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 18
〈표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내용	· 22
〈표 2-1〉 소득별 점유형태	· 32
〈표 2-2〉 주택소재지별 주택 수(2019년)	· 34
〈표 2-3〉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2018~2019년)	· 36
〈표 2-4〉 주택이외의거처 거주자의 타지 주택 보유 여부(2017년)	· 38
〈표 2-5〉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거래 현황 통계 차이	· 45
〈표 2-6〉 가계대출 추이	· 52
〈표 2-7〉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 53
〈표 2-8〉 예금취급기관의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 53
〈표 2-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 54
〈표 2-10〉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 54

〈표 2-11〉 기타 금융기관의 유형별 가계대출 추이	55
〈표 2-12〉 가계부채 통합 DB 주요 항목	57
〈표 2-13〉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주요 제공 정보	58
〈표 2-14〉 주택유형별 대출금액: 보증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62
〈표 2-15〉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현황	62
〈표 2-16〉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 현황	63
〈표 2-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주택자금대출 규모	64
〈표 2-18〉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비교	66
〈표 2-19〉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의 주요 항목	73
〈표 2-20〉 통계기업등록부(SRB)의 주요 기초자료	73
〈표 3-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81
〈표 3-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표: 97등급	85
〈표 3-3〉 자동차점수	87
〈표 3-4〉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표	88
〈표 3-5〉 연도별 건강보험료 상·하한 금액 및 가입자 수	89
〈표 3-6〉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90
〈표 3-7〉 건강보험수입 및 누적법정준비금 현황	90
〈표 3-8〉 건강보험지출 현황	91
〈표 3-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93
〈표 3-10〉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94
〈표 3-1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2020년 기준	95
〈표 3-12〉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샘플가중치 적용한 결과	96
〈표 3-13〉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100
〈표 3-14〉 거주 주택 현황	100
〈표 3-15〉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101
〈표 3-16〉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 102	
〈표 3-17〉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102	



〈표 3-18〉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103
〈표 3-19〉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금융부채 보유 가구비율	103
〈표 3-20〉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담보부채 보유 가구비율	103
〈표 3-21〉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규모	104
〈표 3-22〉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105
〈표 3-23〉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주택 면적별 분포	106
〈표 3-24〉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07
〈표 3-25〉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108
〈표 3-26〉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109
〈표 3-27〉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10
〈표 3-28〉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11
〈표 3-29〉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60%	112
〈표 4-1〉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116
〈표 4-2〉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119
〈표 4-3〉 가구주의 일반 특성	120
〈표 4-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121
〈표 4-5〉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원수별 분포	122
〈표 4-6〉 가구주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122
〈표 4-7〉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분위별 분포	123
〈표 4-8〉 가구주의 연령별 점유형태별 분포	124
〈표 4-9〉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유형별 분포	124
〈표 4-10〉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분포	125
〈표 4-11〉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규모	126
〈표 4-12〉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지역별 분포	126
〈표 4-13〉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분위별 분포	127
〈표 4-14〉 가구 자산 분포	128
〈표 4-15〉 가구주 연령별 가구 자산 분포-수정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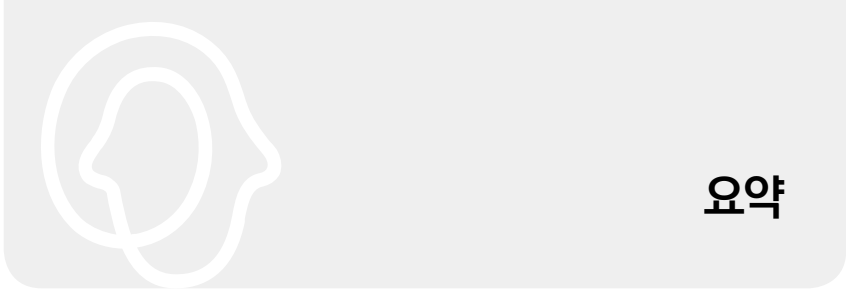
〈표 4-16〉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자산 분포	129
〈표 4-17〉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세부 자산 분포	130
〈표 4-18〉 가구의 부채 유무 현황	131
〈표 4-19〉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총부채 분포	131
〈표 4-20〉 가구의 자산분위별 가구 총부채 분포	132
〈표 4-21〉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금융부채 분포	132
〈표 4-2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133
〈표 4-23〉 수도권거주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134
〈표 4-2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34
〈표 4-25〉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35
〈표 4-26〉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36
〈표 4-27〉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36
〈표 4-28〉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소득분위별)	137
〈표 4-29〉 소득분위별 가구자산 분포	137
〈표 4-30〉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138
〈표 4-31〉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38
〈표 4-32〉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39
〈표 4-33〉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40
〈표 4-34〉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40
〈표 4-35〉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지역별 규모와 분포	143
〈표 4-36〉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규모와 분포	143
〈표 4-37〉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규모와 분포	144
〈표 4-38〉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자산 분포	144
〈표 4-39〉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자산 분포	145
〈표 4-40〉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및 세대 분포: 주거실태조사 결과	146
〈표 4-41〉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자산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148
〈표 4-42〉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부채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150



〈표 4-43〉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152
〈표 4-44〉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152
〈표 5-1〉 분석결과: 5천만원 재산기본공제 반영	161
〈표 5-2〉 분석결과: 재산9억 기준	162
〈표 5-3〉 여신분류	163
〈표 5-4〉 금융거래확인서의 주요 내용	164
〈표 5-5〉 금융회사의 범위	168
〈표 5-6〉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2020년 기준	169

그림 목차

[그림 2-1]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상품별 대출잔액 추이	60
[그림 2-2]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업권별 주택담보대출잔액 추이	60
[그림 2-3] 가계금융부채 관련 필요 자료 예시	65
[그림 2-4]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 구축 및 통계 작성 과정	68
[그림 3-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84
[그림 4-1]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 산출을 위한 가정	142
[그림 5-1]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155
[그림 5-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9
[그림 5-3]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인정의 기준	163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정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이외의 요소가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기인함.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 자산에 대한 순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및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개정됨.
 - 2022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①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연구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자 규모, 보유 부채 규모 등의 현황을 추정하여 건강보험료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방식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2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방안과의 연계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재산 및 부채 규모 현황 분석

-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 및 부채 유형에 대한 현황 분석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자산, 부채 유형 현황 분석

□ 개정안 적용대상자 및 보험료 부담 규모 변화 추정

- 개정안 시나리오별 적용대상자 규모 추정

구분		검토 내용	
선정 기준	대상자	구매	1주택, 국민주택규모, 시가(6.9억원), 실거주자
		임차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시가(6.9억원), 실거주자
	금융부채 범위		1-2금융권(3금융권, 사적부채 제외)
선정 방식	평가방식		재산 및 전월세 평가방식을 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 여부
	상한방식	구매	예) 시가의 60% 등
		임차	예) 임차보증금의 80% 등

□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산정방식, 운영방식 마련

-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공시지가의 상한액
- 대출용도 확인, 부채인정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
- 대출금액의 평가액 또는 평가구간 설정 등

3. 가계금융복지조사 DB 활용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개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의 연계를 모색하였으나, 개인정보, 기관별 규정 등에 의한 자료의 확보 한계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국가통계로,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활용

□ 조사항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시도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샘플 수: 약 2만 가구

구분		주요 항목
자산	실물자산	거주주택 종류, 주거용 면적, 현재 시가, 임대보증금, 월세, 거주주택 외 보유부동산 등
	- 금융자산	저축, 펀드, 공적연금 등
	금융자산 운용	여유자금 운용 등
	부동산 운용	부동산 투자 여부 등
부채	-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할부금융 및 리스 등 임대보증금
	부채상환 능력	부채규모, 상환방법 등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계 지출	비소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주요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료: 통계청(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소득 및 지출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결과(응답거부 및 부정확한 응답 등)를 보완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DB 제한점

- 조사가구의 건강보험자격유형에 대한 직장/지역가입자 유무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가구단위가 조사의 기본단위이므로, 개인단위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정 방법

- 지역가입자는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

지역 가입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하고 제외 -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
분석 대상자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지역가입자의 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영역별 분포(%)를 적용하여 모형을 구축함.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 소유유형 및 금융부채에 관한 자료를 연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부채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도 시행 이전에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금융부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부채 현황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건강보험DB와 같이 전수 데이터는 아니지만, 샘플링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따라 금융부채와 관련한 현황 및 규모를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를 재산정하기 위한 과정
-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지역가입자 세대 수 추정
 - 자산규모 산출
 - 전체 자산=거주주택자산+거주주택이외부동산+기타 실물자산
 - 재산 기본공제 적용
 - 재산금액 = 재산과표(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기본공제액
 - 재산세 과세표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재산공제 5천만원(재산과표기준) 적용
 - 부채규모 산출

6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분석절차)

재산점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규모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산정
세대 수 분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실거주자, 주택이 없는 전·월세거주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 수 비율 적용 · 1주택세대 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 수×(가계금융복지조사) 1주택실거주자 비율(%) · 전·월세세대 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 수×(가계금융복지조사) 전·월세거주자 비율(%)
자산규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자산=거주주택자산+거주주택이외부동산+기타 실물자산 - 재산기본공제(과표기준 5천만원) 적용 - 1주택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택 현가격 기준 주택과세표준=주택 현가격×0.7×0.6 - 전월세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월세보증금 기준 전월세=(보증금+(월세×40)×0.3-재산기본공제 월세 대리지표=주거비×0.8
부채규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용도=주택구입 & 거주주택 담보 - 대출용도=전월세보증금 - 1,2금융권 및 3금융권, 신용대출로 구분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약 63.6%이며, 이 중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약 57.7%이었음.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 484만원이었고,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 2,313만원이었음.

〈요약표 1〉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비율(%)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부채보유	금융부채	57.7	10,484
	- 담보대출	38.5	12,313
	- 신용대출	22.3	3,892
	소계	63.6	12,970
부채미보유	소계	36.4	-
계		100.0	-

주: 샘플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부채에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 구입, 개인적 거래, 연금형 부채(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포함됨.

□ 가구당 주택의 소유 현황

- 1주택인 경우는 36.5%이었고, 다주택 24.4%, 전월세에 거주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임.

8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요약표 2〉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단위: %)

구분	직장가입 (상용, 고용원 있는 자영업)	지역가입 (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자 등)	계
1주택	38.5	34.8	36.5
전세+주택미보유	13.0	7.6	10.1
월세+주택미보유	13.6	20.2	17.2
다주택	23.9	24.8	24.4
전월세+부동산보유	8.5	6.1	7.2
기타(무상, 사택 등)	2.6	6.4	4.6
계	100.0	100.0	100.0

□ 지역가입자의 거주 주택의 면적

- 1주택이면서 85㎡미만이 34.0%, 다주택이면서 85㎡미만이 18.4%임.

〈요약표 3〉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34.0	37.4	36.0
전세+주택미보유	9.1	2.6	10.9
월세+주택미보유	25.4	3.5	16.2
다주택	18.4	46.0	25.9
전월세+부동산보유	6.2	5.9	7.8
기타(무상, 사택 등)	6.9	4.6	3.1
계	100.0	100.0	100.0

주: 주거용 전용면적 기준

-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 등) 중에 금융부채 적용대상자를 전체 비율로 하였을 때, 1주택자가 85㎡미만이 41.5%, 전세거주자가 85㎡미만이 11.2% 등으로 분포하였음.

〈요약표 4〉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41.5	14.0	55.5
전세+주택미보유	11.2	1.0	12.2
월세+주택미보유	31.0	1.3	32.3
계	83.7	16.3	100.0

□ 지역가입자 중에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

- 1주택자의 주택자산은 약 2억 6천만원이며, 전세거주자의 보증금은 가구당 평균 9천만원, 월세보증금은 1천 8백만원 정도였음.

〈요약표 5〉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단위: 만원)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20,741	40,759	25,784
전세보증금	8,582	16,357	9,192
월세보증금	1,699	4,571	1,816

□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보면, 1주택자는 42.1%, 전세거주자는 44.8%, 월세거주자는 60.8%이었음.

- 지역가입자 중에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주택가구는 30.6%, 전세거주자 중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3.2%, 월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은 11.9%이었음.

1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요약표 6〉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부채 보유가구 비율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31.6	28.1	30.6
전세	22.0	36.8	23.2
월세	11.5	21.6	11.9

〈요약표 7〉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 규모

(단위: 만원)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담보_1,2금융권	8,341	13,337	9,356
	담보_3금융권	134	214	150
	신용대출	33	80	43
	소계	8,508	13,631	9,549
전세보증금	담보_1,2금융권	6,108	10,991	6,763
	담보_3금융권	251	-	217
	신용대출	21	-	18
	소계	6,380	10,991	6,998
월세보증금	담보_1,2금융권	2,755	8,910	3,403
	담보_3금융권	276	8,948	1,189
	신용대출	31	-	28
	소계	3,062	17,858	4,620

2) 대상자 규모 추정

□ 전체 지역가입자인 약 8백만명 중에 약 4백65만명(55.7%)이 1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요약표 8〉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1주택 보유 & 거주	전세	월세	계
경제활동	1,064	502	628	2,194
비경제활동	1,104	520	818	2,441
계	2,167	1,022	1,445	4,635

□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적용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경우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약 95%가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며 그 규모는 약 207만명에 해당됨.

〈요약표 9〉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1주택		전세		월세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	100이하	316	14.6	655	64.1	365	25.2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1,536	70.9	367	35.9	1,083	74.7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216	10.0	0	0.0	2	0.1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43	2.0	0	0.0	0	0.0
34~	53,600~	57	2.6	0	0.0	0	0.0
	계	2,167	100.0	1,022	100.0	1,450	100.0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적용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이면서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할 경우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약 163만명이 적용대상자에 해당됨.

12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요약표 10〉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85㎡미만		85㎡이상	
		세대수	%	세대수	%
-	100이하	284	17.1	31	6.2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1,236	74.6	300	58.9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113	6.8	103	20.2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17	1.0	26	5.0
34~	53,600~	8	0.5	50	9.7
	계	1,658	100.0	510	100.0

주: 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3) 대상자 중에 담보대출 보유자

- 공시지가 3억이하이면서 주택규모가 85㎡미만의 경우 약 17.3%의 세대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억원인 경우 그리고 주택규모가 85㎡미만의 경우에 2.4%가 부채를 보유.
- 6억원 & 85㎡미만 : 해당 세대수는 약 32만 6천세대가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됨.

〈요약표 11〉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85㎡미만			85㎡이상		
		금융부채 세대수	%	적용대상 자대비 부채보유 비중	금융부채 세대수	%	적용대상 자대비 부채보유 비중
-	100이하	0	0.0	0.0	0	0.0	0.0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286	86.6	17.3	53	55.3	10.4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40	12.0	2.4	23	24.2	4.6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3	1.1	0.2	5	5.7	1.1
34~	53,600~	1	0.3	0.1	14	14.9	2.8
	계	330	100.0	19.9	95	100.0	18.9

주: 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4) 모형 분석 결과

□ 공시지가 9억을 기준으로 하며, 1주택자 부채적용율을 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을 30%로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주택규모를 85㎡ 미만으로 적용하고 1, 2금융권의 부채만 인정할 경우, 약 1,514억원의 보험료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1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요약표 12〉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부채공제후 (1,2금융)	450,011	404,168	5,833	2,289
차이	-137,158	-36,947	-5,151	-1,141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447,509	403,199	5,833	2,289
차이	-139,660	-37,916	-5,151	-1,141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1,416	419,621
차이	-9,069	-2,148	-151,378	-40,236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85,572	11,781	538,914	417,269
차이	-9,069	-3,530	-153,880	-42,588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요약표 13〉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부채공제후 (1,2금융)	451,774	406,462	5,833	2,289
차이	-135,394	-34,653	-5,151	-1,141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449,272	405,492	5,833	2,289
차이	-137,896	-35,623	-5,151	-1,141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3,179	421,914
차이	-9,069	-2,148	-149,615	-37,942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85,572	11,781	540,678	419,563
차이	-9,069	-3,530	-152,117	-40,294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 이와 같이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원의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재산 산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또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주택이 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6억과 9억 기준의 결과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분석

□ 공시지가 6억원을 기준하였을 때에, 담보대출을 공제한 이후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약 2천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요약표 14〉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현모형	1,622,543	31,413	2,684	1,656,640
공제후 모형	1,425,755	28,057	2,413	1,456,225
				-200,415

주: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6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하였을 때에, 담보대출을 공제한 이후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약 2천 16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요약표 15〉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현모형	1,622,543	31,413	2,684	1,656,640
공제후 모형	1,424,588	28,057	2,413	1,455,057
차이				-201,582

주: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4. 금융 부채의 부과 방식

□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지역가입자의 대상자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구입: 1가구 1주택 (부부합산) ② 주택임대: 전월세 임대자 +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주택 실거주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제 거주 판단불가: 주민등록주소(도로명주소)와 물건지주소(지번)의 수작업 매칭이 필요하나, 현장적용 시 어려움 예상
주택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면적기준) 국민주택 85㎡(수도권), 100㎡(수도권 이외) 이하 ② (금액기준) 기준금액(예,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및 상한액 설정 여부, 기준금액의 변동성 인정여부(예, 대출당시 또는 매년 공시지가 반영 등) ③ (두 개의 기준) 면적기준+금액기준
대출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출상품 중 주택담보대출 한정 여부(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회사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 2금융권 인정) '금융회사 등'에 대한 범위 설정 ※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3호)
부채 평가 방법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산) 현행 재산과표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재산과표 적용: 부채×60% ② (전월세)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부채×30%

□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로 금융부채 인정을 한정할 경우에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금융부채 감면 적용을 받는 규모가 축소됨.

○ 다만, 주택규모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적음.

○ 6억원 & 85㎡미만기준 : 해당 세대수는 약 33만세대가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됨.

18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요약표 16〉 분석결과: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9억 기준	부채공제후 (1,2금융)	450,011	404,168	5,833	2,289
	차이	-137,158	-36,947	-5,151	-1,141
6억 기준	부채공제후 (1,2금융)	451,774	406,462	5,833	2,289
	차이	-135,394	-34,653	-5,151	-1,141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9억 기준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1,416	419,621
	차이	-9,069	-2,148	-151,378	-40,236
6억 기준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3,179	421,914
	차이	-9,069	-2,148	-149,615	-37,942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차이는 보험료 수입감소를 의미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 적용한 모형의 결과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정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이외의 요소가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기인함.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주택 자산에 대한 순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및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개정됨.
 - 2022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3.>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시행일 : 2022. 7. 1.] 제72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72조제4항

자료: 법제처

□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 2016년에 신상진의원 대표 발의

■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6.7.12.)

- (제안이유) 보험료 산정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실제거주목적+국민주택규모+1가구1주택)
- (주요내용) “보험료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로서 실제거주를 목적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거래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하여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함”

관련 논의 사항

- 취지는 타당. 지역가입자는 소득이외 재산,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자산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단, 주택 이외에 여타자산이 없는 경우로 제한.
-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재산가액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 확대할 예정이며, 부채발생 및 상환 변동에 대한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고소득자가 부채가 많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음.
- 부채상환 파악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신상진의원 안에 동의
- 사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문제 발생가능

○ 2019년 법안심사 소위원회

▣ 법안심사 소위원회 대안 (2019.7.15.)

- (제안이유)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금액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함"

관련 논의 사항

- 재산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필요. 전월세 세입자도 경감대상에 포함. 거주주택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자로 제한.
-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보험료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음. 고소득자의 부채가 많으므로 형평부과와 다소 동떨어짐. 부채이외에 사적 부채에 대한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금융부채 정보 파악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
- 개인 간 금융거래는 신고로 해결 가능.
- 개인의 신청을 통한 업무처리 가능
- 정책, 시행과 관련한 준비시간 필요

○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년 12월 3일 법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자 규모, 보유 부채 규모 등의 현황을 추정하여 건강보험료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방식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방안과의 연계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자 및 부채규모 등 현황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규모의 변화 분석
- 적용대상자 선정기준, 산정방식, 운영방식 마련
- 향후 부과체계 개선방안과의 연계 및 개선과제 도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재산 및 부채 규모 현황 분석

-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 및 부채 유형에 대한 현황 분석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자산, 부채 유형 현황 분석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시도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샘플 수: 약 2만가구
 -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자산, 부채 유형 현황 분석
 -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2020년도 실시하였으며, 일반가구 대상의 가구설문조사임
 - 주거기본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에 기반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서 원시자료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함.
 - 표본 수: 60,735가구

2) 개정안 적용대상자 및 보험료 부담 규모 변화 추정

□ 개정안 시나리오별 적용대상자 규모 추정

구분			검토 내용
선정 기준	대상자	구매	1주택, 국민주택규모, 시가(6,9억원), 실거주자
		임차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시가(6,9억원), 실거주자
	금융부채 범위		1-2금융권(3금융권, 사적부채 제외)
선정 방식	평가방식		재산 및 전월세 평가방식을 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 여부
	상한방식	구매	예) 시가의 60% 등
		임차	예) 임차보증금의 80% 등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과 개정안 시나리오를 융합한 보험료 부담 규모 변화 추정

3)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산정방식, 운영방식 마련

□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정방식 마련

-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공시지가의 상한액
- 대출용도 확인, 대출자와 소유자의 차이 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 마련
- 대출금액의 평가액 또는 평가구간 설정 등

□ 금융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 검토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채무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금액 및 상환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임.

- 금융대출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
- 단, 사회보장정보원은 제1·2금융권에 대한 대출현황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음.
- 국민주택규모를 선정기준으로 할 경우에 대상주택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해당 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 또는 접근성이 요구됨.

4) 부과체계 개선방안과의 연계 및 개선방안 도출

- 부과체계 개선방안과의 연계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집행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 도출
 - 소득 중심 부과체계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하여, 부채 적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제2장

가계의 주택금융부채 DB현황

제1절 주택관련 통계 현황

제2절 주거관련 주요 DB구축 현황

제3절 가계대출 관련 통계 및 DB

제4절 공적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제5절 가계금융부채의 연계 데이터 사례

제6절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제 2 장 가계의 주택금융부채 DB현황

-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이태리 외, 2017)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용어 사용
 - 외국의 모기지 혹은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를 말함.

제1절 주택관련 통계 현황

-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된 통계로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임대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도시기금및주택보증현황, 주택보급률, 주택보증통계, 주택소유통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주택총조사 등 14종이 있음.
- 이중 주거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주거실태조사, 주택소유통계, 임대주택통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주택총조사 등 5종임.

가. 주거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통계청, 통계설명자료¹⁾)

□ 법적 근거 및 작성 주기

- 주거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시도 단위로 공표

□ 주요 조사항목²⁾

- 크게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배경문항 등으로 구성됨(국토교통부, 2020).
- 주택 및 주거환경은 주택 마련 관련,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은 이사경험,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주거의식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 평가 및 정책수요는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이용여부,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등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에 대한 사항은 가구 현황과 가구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질

1) <http://meta.narastat.kr>

2) 주요 조사항목은 2015년 김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도 소개되어 있음

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배경문항으로는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소득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로 거주하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음(국토교통부, 2020).

- 특히,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9%로 소득 중위(3.2%), 소득 상위(1.8%)보다 비중이 높음.
- 소득 하위 가구의 월세 거주비율은 36.7%로 소득 중위(18.6%), 소득 상위(6.6%)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 상위 가구는 전년 대비 자가비율은 증가하고 전세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중위 가구는 자가비율 감소, 전·월세 비율 증가, 소득 하위 가구는 자가·전세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월세 비율은 증가하였음(국토교통부, 2020).

32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1〉 소득별 점유형태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하위	2006	49.7	18.8	20.3	7.1	4.1	100.0
	2010	46.9	16.8	25.8	6.9	3.7	100.0
	2014	47.5	14.2	29.4	4.6	4.2	100.0
	2016	46.2	12.9	28.7	6.6	5.6	100.0
	2017	47.5	11.5	28.9	6.9	5.1	100.0
	2018	47.2	11.6	29.1	6.6	5.4	100.0
	2019	46.4	10.9	29.5	7.2	5.9	100.0
중위	2006	55.3	26.5	14.2	1.5	2.5	100.0
	2010	54.0	25.0	17.1	1.5	2.3	100.0
	2014	52.2	23.3	21.4	0.8	2.3	100.0
	2016	59.4	18.1	17.8	1.4	3.4	100.0
	2017	60.2	18.0	17.0	1.2	3.6	100.0
	2018	60.1	18.1	16.9	1.5	3.5	100.0
	2019	59.6	18.7	17.4	1.2	3.2	100.0
상위	2006	67.0	23.2	7.2	0.5	2.2	100.0
	2010	69.5	23.0	5.6	0.5	1.4	100.0
	2014	69.5	20.8	7.7	0.4	1.6	100.0
	2016	73.6	15.9	7.6	0.7	2.2	100.0
	2017	73.5	17.1	6.9	0.3	2.3	100.0
	2018	75.2	16.1	6.2	0.4	2.0	100.0
	2019	76.1	15.3	6.2	0.4	1.8	100.0

주 : 사글세 또는 연세는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각 시도별 표본 수가 적고, 현재 설계상 사후 가중치를 세부 점유형태별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글세 또는 연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국토교통부(2020) 재인용.

나. 주택소유통계의 개요

□ 작성 목적

-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구의 주택소유현황, 주택 소유자의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및 주택가액별 현황 등을 분석(통계청, 통계설명자료3))

□ 법적 근거 및 작성 주기

-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행정자료를 입수한 후 매년 작성하여 시군구 단위로 공표

□ 주요 제공 정보

-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 주택 수와 소유자 수 등을 공표
- 2019년 기준 주택소유지별 주택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약 1,812.6만 호이고 아파트는 약 1,128.7만 호임.
 - 개인소유주택은 약 1,568.8만호로 전체 주택수의 약 86.5%에 달함.

3) <http://meta.narastat.kr>

3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2〉 주택소재지별 주택 수(2019년)

(단위: 호)

구분	총주택	개인소유주택	총아파트	개인소유아파트
전국	18,126,954	15,688,708	11,287,048	9,377,878
서울특별시	2,953,964	2,603,182	1,720,691	1,446,390
부산광역시	1,249,757	1,112,532	831,294	719,139
대구광역시	800,340	715,803	579,777	504,766
인천광역시	1,019,365	908,703	648,403	562,880
광주광역시	526,161	449,711	419,567	350,515
대전광역시	492,797	433,024	362,190	310,220
울산광역시	391,596	357,483	286,234	257,660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04,383	112,722	85,993
경기도	4,354,776	3,720,475	3,021,258	2,492,579
강원도	627,376	518,534	346,389	260,639
충청북도	625,957	528,314	369,668	290,444
충청남도	850,525	727,628	467,790	382,350
전라북도	724,524	608,803	401,005	325,040
전라남도	787,816	629,255	346,990	240,123
경상북도	1,081,216	936,551	529,133	433,661
경상남도	1,266,739	1,127,511	767,442	658,101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206,816	76,495	57,378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다. 임대주택통계의 개요

□ 임대주택통계

○ 작성 목적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건설실적, 분양전환 실적, 임대주택 재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하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⁴⁾

4) kosis.kr

○ 법적 근거 및 작성 주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60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 48조의 7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시도 단위로 공표

○ 주요 제공 정보

- 시도별, 연도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분양전환 실적 및 증가현황,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임대주택 건설공급현황 등 정보 제공

○ 임대주택 통계상 연도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임대사업자는 31만 5,613명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총 304만 4,746호로 나타남.

- 임대주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으로 약 115만호 정도임.

36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3〉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2018~2019년)

(단위: 명, 호)

구분		2018		2019	
		사업자수	임대호수	사업자수	임대호수
합계		342,763	2,984,664	315,613	3,044,746
공공주택사업자	건설임대	20	1,120,655	15	1,154,860
	매입임대	0	215,017	0	239,621
	전세임대	3	234,570	2	265,647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임대	91	79,531	397	72,704
	매입임대	48	18,205	176	16,284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	1,508	47,303	1,197	26,966
	매입임대	32,304	100,808	24,349	89,350
단기임대주택	건설임대	2,935	45,180	2,952	48,254
	매입임대	134,330	320,186	130,481	357,488
중전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4,366	82,310	2,441	67,087
	건축법 허가자	7,197	184,928	6,455	99,044
중전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된 매 입임대사업자	중전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	108,751	390,187	77,323	373,468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	건설임대	1,059	15,583	1,503	34,002
	매입임대	49,936	117,385	68,199	184,509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자	건설임대	85	10,838	65	13,251
	매입임대	130	1,978	58	2,211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각년도.

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 조사목적

- 전국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 주기

- 5년 단위로 조사(2017년 최초 조사)

□ 주요 제공 정보

- 거처유형, 가구월평균 소득, 가구주 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 수급가구 여부, 주민등록 등재 위치, 가구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유무, 가구형태, 타지주택 보유 여부, 현재거처 거주기간 및 선택 이유, 주거전용면적, 자가가구 매입가격, 월세가구의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
- 2017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결과, 주택이외거처 거주자의 타지주택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수록, 전용면적이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주거급여 비수급가구일수록 타지주택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38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4〉 주택이외의거처 거주자의 타지 주택 보유 여부(2017년)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보유	미보유
전국	합계	369,501	18.3	81.7
지역별	수도권	190,186	11.0	89.0
	비수도권	179,315	26.0	74.0
전용면적	6.5㎡ 미만	35,453	4.8	95.2
	6.5~14㎡ 미만	75,228	7.6	92.4
	14~26㎡ 미만	85,790	7.3	92.8
	26~36㎡ 미만	16,798	15.3	84.7
	36㎡ 이상	11,685	17.8	82.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1,419	5.2	94.8
	100~200만원 미만	108,241	12.3	87.7
	200~300만원 미만	93,705	18.6	81.4
	300~400만원 미만	48,218	30.8	69.2
	400만원 이상	37,841	46.9	53.1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88,140	0.6	99.4
	30~39세	49,450	9.5	90.5
	40~49세	49,071	21.3	78.7
	50~59세	78,073	29.9	70.1
	60세 이상	104,766	27.2	72.8
가구주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2,796	20.2	79.8
	고등학교 졸업	125,827	23.1	76.9
	대학교 재학	29,552	0.4	99.6
	대학교 졸업	114,042	16.0	84
	대학원 재학 이상	17,284	19.8	80.2
가구주 직업	상용근로자	106,166	14.1	85.9
	임시·일용근로자	67,965	7.3	92.7
	자영업자	116,925	36.8	63.2
	무직·기타	78,445	5.8	94.2
수급가구 여부	수급가구	23,921	2.2	97.8
	비수급가구	345,580	19.4	80.6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마. 주택총조사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통계청, 통계설명자료⁵⁾,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⁶⁾)

□ 법적 근거 및 작성 주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라 매년 조사하여 읍면동 단위로 공표
- 2015년 이후로는 5년 단위로 등록센서스에 의한 전수자료와 20% 표본자료를 공표

□ 주요 제공 정보

- 주택 종류별 호수, 거처별 호수, 주택종류별 연면적,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 주택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

제2절 주거관련 주요 DB구축 현황

- 주거관련 DB로는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부동산통계정보(R-ONE), 주택정보포털(HOUSTA),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씨:리얼, 건축물생애주기관리시스템, 마이홈, 렌

5) <http://meta.narastat.kr>

6) <https://mdis.kostat.go.kr>

트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기정보광장 등이 있음.

- 이들 DB는 크게 주택 관련 통계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임대)정보 시스템으로 구분 가능함.

가. 주택 관련 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 공공이 구축한 주택 관련 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교통통계누리, 부동산통계정보(R-ONE), 주택정보포털(HOUSTA), 씨:리얼 등이 있음.

□ 국토교통통계누리

- 국토교통 통계누리⁷⁾에서는 국토, 주택, 토지, 건설, 교통, 항공,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국가 승인통계, e-나라지표, 행정자료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
 - 국토도시분야에 관한 통계정보: 국토계획, 수도권정책, 국토지리정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건축허가 등
 - 토지 관련 통계정보 제공: 토지소유현황, 지가변동률조사 등
 - 교통·물류 관련 통계정보 제공: 대중교통현황, 자동차등록현황, 교통부문수송실적, 국가교통조사, 교통문화실태조사 등
 - 도로철도분야의 통계정보 제공: 국도로시설, 고속도로교통량통계, 도로투자현황, 철도경찰통계, 철도사고현황, 한국철도

7) stat.molit.go.kr

통계

- 주택분야의 통계정보 제공: 부동산거래, 미분양주택현황, 주택보급률, 전국주택가격조사 등

□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은 부동산통계전용 홈페이지로 한국부동산원에 생산하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국가통계를 통합하여 제공
 - ‘부동산통계’ 자료를 통해 토지가격,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월별, 지역별 단위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와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등의 내용도 제공
 - 공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착공, 준공, 미분양 등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내용을 제공
 - 부동산통계정보에서는 ‘부동산 통계 돋보기’ 메뉴를 사용하여 검색 현시점의 지역별 부동산 관련 통계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검색 현시점 기준(일) 시도단위로 지가변동률, 토지거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주택가격, 실거래 가격지수,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재고, 거시경제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변세일 외, 2018)

□ 주택정보포털(HOUSTA)

○ 대한도시주택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보포털에서는 주택 보증 및 분양정보와 함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주택정보포털(HOUSTA)은 주택사업자에게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주요통계 및 분양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소비자에게 매매 및 임대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축(변세일 외, 2018)
- 주택정보포털(HOUSTA)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보증 통계정보, 주택도시사업자가이드, 주택도시소비자가이드 등이 있음.
- 주택보증 통계정보에서는 보증실적 및 이행 현황과 시도별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 세대수 등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을 확인 가능
- 주택도시사업자 가이드에서는 인근아파트 분양이력정보도 시군구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고 유용한 사이트 정보도 제공
- 주택도시소비자가이드에서는 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정보와 연동하여 주택 유형별 가격정보, 아파트 매물 및 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련 사이트 링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

□ 씨:리얼(SEE:REAL)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씨:리얼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을 위해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

- 씨:리얼에서는 크게 씨:리얼지도, 부동산 통계, 부동산 트렌드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씨:리얼지도는 다양한 통계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보기 쉽게 지도로 보여주는 주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구이동과 가구이동을 지도에서 볼수 있는 인구이동 이지:뷰, 주택유형별 거래량, 재고량, 준공연도를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주택정보 이지:뷰 등으로 구성⁸⁾
 - 부동산종합정보지도, 가격검색지도, 개발사업지구지도, 인구정보지도, 주택정보지도, 다필지분석지도, Life Style 지도 등 제공
 - 부동산통계는 거시경제, 토지, 주택, 산업, 인구통계 등 부동산 현황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부동산트렌드에서는 복잡한 부동산정책을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
 - 정책가이드, 생활가이드, 전문가기고, 부동산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

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임대) 정보 시스템

-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임대) 관련 통계시스템으로는 렌트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기정보광장 등이 있음.

8) 씨:리얼홈페이지(<https://seereal.lh.or.kr/main.do>에서 2021.7.15. 검색)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 자료를 공개(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⁹⁾

- 매매거래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이 대상(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¹⁰⁾
- 전월세거래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가 대상(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¹¹⁾
- 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¹²⁾

9)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2021.7.14. 검색)
1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2021.7.14. 검색)
1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2021.7.14. 검색)
1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2021.7.14. 검색)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정보, 주소정보 등이 누락되어 있으나 행정망 내부자료에는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자산 현황 및 실제 주소를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

〈표 2-5〉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거래 현황 통계 차이

구분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	매매거래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 (R-ONE)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신고일 이후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2021.7.14. 검색)

□ 법원 등기정보광장

-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의 등기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현황
 -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지역(시도, 시군구) 별 부동산 건수와 채권최고액에 대한 평균 금액을 월 단위로 제공함.
 -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지역, 부동산별)
 -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을 지역(시도, 시군구), 부동산 구분(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기목적(보존, 이전 등), 등기원인(매매, 증여 등)별로 부동산 수를 월단위로 제공함.

- 부동산 신청사건 일반 현황
 -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지역(시도, 시군구), 등기목적(보존, 이전 등), 등기원인(매매, 증여 등)별로 부동산 수를 월단위로 제공함.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현황
 -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지역(시도, 시군구)별 부동산 건수와 전세금에 대한 평균 금액을 월단위로 제공함.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역(시도, 시군구), 등록번호구분(내국인, 외국인, 법인), 남/여, 연령별로 명의인 수를 제공함.
- 소유권, 지당권, 전세권 설정 현황을 통해 자산 현황과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고 확정일자 현황을 통해 소유주와 임차인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등기현황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를 연계 활용하면 부동산 보유 현황과 함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단, 등기현황 자료는 법원 소관 자료이고 주민등록 자료는 행정안전부 소관 자료라 실제 연계가 쉽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음.

제3절 가계대출 관련 통계 및 DB

- 가계대출 확인 가능 통계 및 DB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가계부채 통합DB, 한국은행 가계부채 신용DB, 신용정보원DB 등이 있음.

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

- 작성 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통계청, 통계설명자료¹³⁾)

- 활용분야

-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 등 재무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경제적 삶의 정도를 측정(국가통계포털)¹⁴⁾
 - 노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¹⁵⁾)
 -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최초로 시도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변준석·윤병우, 2020)

13) <http://meta.narastat.kr>

14)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2021.7.15. 검색)

15)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2021.7.15. 검색)

□ 조사방법 및 주기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을 병행(변준석·윤병우, 2020)
- 통계청(2018)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도 동표본 조사이고, 동일 가구를 일정 기간(5년)에 걸쳐 조사(통계청,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통계청(2018)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인가구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주말부부, 학기 중 외지거주 학생 등)은 포함하고,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가사사용인, 하숙인 등)은 제외(통계청,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조사의 경우 2011년에 최초로 실시(변준석·윤병우, 2020)

○ 조사주기

- 조사 주기 및 공표 주기는 각각 1년

□ 주요 조사항목¹⁶⁾

-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가계지출, 노후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가구주 및 가구원의 가족구성에 관한 사항
 - 실물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 운용, 부동산 운용 등 자산 관련 사항
 - 금융부채, 부채상환능력 등 부채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에 관한 사항
 -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주요지출과 세금, 연금 등 비소비 지출로 구성된 가계지출 사항
 - 은퇴여부, 은퇴연령 등 노후생활에 관한 사항
 - 이사시기, 장소 등 패널관리 관련 사항
 - 자가주택 수선비, 재산세 등 부가항목 등에 대해 조사

□ 자산 및 부채, 소득 항목 분류¹⁷⁾

-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부채액은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으로 분류
 - 자산액 중 금융자산은 적립·예치식 저축, 기타저축 등 저축액과 전세, 월세 등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분류
 - 자산액 중 실물자산은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과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으로 분류

16) 세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청(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

17) 자산 및 부채항목 분류에 대해서는 통계청(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

- 부채액 중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외상 및 할부, 기타부채 등으로 분류
- 부채액 중 임대보증금은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 외 임대 등으로 분류
-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으로 분류
- 비소비지출은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비용 등으로 분류

나. 한국은행 가계신용DB

□ 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

- 작성 목적: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화정책의 수립 및 금융안정 정책을 지원
- 활용분야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당국의 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대학, 연구기관 등 경제분석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경제지표로 다양하게 활용(변준석·윤병우, 2020)

○ 조사대상

- 조사객체

- 통화, 금리: 예금취급기관
- 유동성: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광의 유동성은 정부 및 기업 포함)
-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및 판매회사
- 지역별 여수신: 예금취급기관 및 생명보험회사
- 산업별 대출금: 예금취급기관(변준석·윤병우, 2020)

- 조사범위

- 통화 및 유동성: 해당기관의 통화 및 유동성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해당기관의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
- 가계신용: 해당기관의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 상품
- 지역별 여수신: 해당기관의 점포소재지 기준 여수신
- 산업별 대출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기관의 원화 대출금 및 기업어음매입(변준석·윤병우, 2020)

○ 제공 자료

- 가계신용을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하여 자료 제공
- 가계대출은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나누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정보를 제공
- 판매신용은 여신전문회사와 판매회사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변준석·윤병우, 2020)

□ 우리나라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흐름

-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기와 2005년~2006년의 주택시장 호황기를 거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2-6〉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가계대출
2011	462,860	398,528	861,388
2012	487,102	418,842	905,944
2013	513,631	446,948	960,580
2014	560,126	464,950	1,025,076
2015	638,311	499,642	1,137,953
2016	715,719	554,089	1,269,808
2017	769,985	599,852	1,369,837
2018	807,978	638,651	1,446,628
2019	842,873	661,701	1,504,574
2020	910,630	720,850	1,631,480
	55.8%	44.2%	100.0%

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 예금취급기관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2.4%이고, 비은행은 27.6%임.

- 이 중에서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으며, 비은행기관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다른 용도의 대출 비중이 높음.

〈표 2-7〉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예금은행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소계		
2011	455,857	183,749	639,606	221,782	861,388
2012	467,269	192,590	659,858	246,086	905,944
2013	481,131	206,055	687,186	273,393	960,580
2014	519,637	226,186	745,823	279,253	1,025,076
2015	563,728	248,632	812,360	325,593	1,137,953
2016	617,420	291,255	908,676	361,133	1,269,808
2017	660,678	313,892	974,570	395,268	1,369,837
2018	713,085	320,733	1,033,817	412,811	1,446,628
2019	767,719	316,263	1,083,982	420,592	1,504,574
2020	849,869	323,826	1,173,695	457,785	1,631,480

주: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표 2-8〉 예금취급기관의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2011	308,877	146,980	79,539	104,210	639,606
2012	318,227	149,042	79,586	113,004	659,858
2013	328,923	152,208	81,254	124,801	687,186
2014	365,580	154,057	86,452	139,735	745,823
2015	401,729	161,999	89,098	159,535	812,360
2016	442,564	174,856	103,275	187,980	908,676
2017	464,209	196,469	114,105	199,787	974,570
2018	494,265	218,819	110,222	210,510	1,033,817
2019	533,966	233,752	99,779	216,484	1,083,982
2020	583,897	265,973	95,745	228,081	1,173,695

주: 예금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5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소계
2011	10,182	19,806	118,544	33,558	1,660	183,749
2012	8,851	21,017	123,985	37,220	1,516	192,590
2013	9,186	22,604	131,145	41,780	1,340	206,055
2014	10,285	25,568	141,700	47,417	1,216	226,186
2015	13,694	30,354	151,771	51,637	1,177	248,632
2016	18,285	36,692	171,052	64,002	1,225	291,255
2017	21,000	37,853	180,354	73,382	1,302	313,892
2018	23,467	36,424	187,871	71,436	1,534	320,733
2019	26,046	35,662	188,520	64,638	1,398	316,263
2020	31,580	35,001	194,558	61,394	1,292	323,826

주: 우체국 등 : 신탁계정 및 우체국예금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표 2-10〉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가계대출
2011	74,445	147,338	221,782
2012	89,289	156,797	246,086
2013	103,454	169,939	273,393
2014	108,095	171,158	279,253
2015	147,485	178,108	325,593
2016	169,880	191,253	361,133
2017	191,672	203,596	395,268
2018	203,490	209,321	412,811
2019	209,128	211,464	420,592
2020	230,988	226,797	457,78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표 2-11〉 기타 금융기관의 유형별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원)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 회사	공적금융 기관	기타금융 중개회사	기타	계
2011	74,707	13,567	38,847	30,481	57,094	7,087	221,782
2012	79,585	14,003	40,328	31,399	72,103	8,667	246,086
2013	86,442	13,955	42,926	31,177	88,718	10,175	273,393
2014	90,849	13,247	45,219	32,715	85,180	12,043	279,253
2015	98,825	12,838	48,255	32,937	119,631	13,107	325,593
2016	108,445	12,961	55,250	34,035	137,288	13,154	361,133
2017	114,818	13,552	59,985	37,207	156,899	12,807	395,268
2018	119,995	14,589	64,537	38,208	163,008	12,474	412,811
2019	119,033	14,831	66,162	41,577	166,911	12,078	420,592
2020	120,613	15,427	70,680	44,751	194,652	11,663	457,785

주: 보험기관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여신전문기관 :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회사
 공적금융기관 :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 :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외감법인 등) 등
 기타 : 한국장학재단 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에서 2020.7.9. 인출)

다. 통계청 가계부채 통합DB

□ 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

○ 작성 목적

- 가계부채 통합 DB는 임금근로자의 대출과 연체에 관한 실태 파악, 일자리, 가계부채 등 관련 정책과 학술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변준석·윤병우, 2020)

○ 활용분야

- 임금근로자 부채(개인대출 및 연체율) 현황 통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가구에 대한 다양한 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한 가계부채 분석에 활용(변준석·윤병우, 2020)

□ DB 구축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DB 등 조사 및 행정자료 등을 통합 연계하여 구축

-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을 기반으로 하며, 성별, 연령, 가구 구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를 반영(변준석·윤병우, 2020)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자료, 사업소득지급 명세서 등 국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일자리행정통계DB와의 연계를 통하여 일자리 정보를 추가(변준석·윤병우, 2020)
- 한국신용정보원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변준석·윤병우, 2020)
- 주택소유통계에서 개인단위의 주택소유 정보를 연계(변준석·윤병우, 2020)

□ 주요 정보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DB 등 조사 및 행정자료 등을 통합 연계하여 가구구성, 재산, 소득, 지출 등 정보 구축(변준석·윤병우, 2020)

〈표 2-12〉 가계부채 통합 DB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개인특성 정보	개인 가구 일련번호, 연령, 거주지 등
가구단위 정보	가구구성원 수, 근로자 가구소득, 가구대출 등
일자리 정보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소득, 종사상지위, 종사자 수 등
주택소유 정보	주택소유지분, 소유주택가격
개인사업자 유무	비임금근로자 여부

자료: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가계부채와 주택특성 분석 및 통계개발연구, 통계개발원, 변준석·윤병우(2020)

라. 한국은행 가계부채 신용DB

□ 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

○ 작성 목적

-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 강화

○ 활용분야

- 경제분석 및 금융안정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가계신용과 동일

□ 작성 방법

○ 신용조회회사인 NICE에서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

- 분기마다 작성 후 해당분기말 자료가 약 2개월 경과 후에 DB에 수록
- 개인정보 문제로 일반인에는 공개하지 않음.
- 다만 연구 목적에 한해서 한국은행과 용역계약을 맺은 후 공동

연구 형식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변준석·윤병우, 2020)

- 모집단은 신용조회회사 NICE로부터, 신용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의 자료를 취득
 - 표본추출은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모집단의 2.4%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
 - 생년월일을 이용해 생성한 난수 중 특정 숫자를 매분기 고정적으로 추출(변준석·윤병우, 2020)

□ 주요 정보

- 개인특성정보, 대출정보, 계좌정보, 카드 정보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

〈표 2-13〉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주요 제공 정보

구분	주요 항목
개인특성정보	개인일련번호, 연령대, 출생년월, 성별, 거주지역(시군구), 신용등급, 신용점수, 소득, 소득등급 등 총 9개 변수
대출정보	금융업권, 대출상품종류, 대출금액, 총대출기관수 및 금액, 총대출건수 및 금액, 신규대출금액, 대부업대출 등 총 20개 변수
계좌정보	금융업권, 대출상품종류, 상환방식(거치기간, 분기중 원금상환액, 분기중 이자상환액), 대출용도, 최초대출일자, 만기일, 최초약정금액, 대출잔액, 연체대환대출여부 등 총 18개 변수
카드정보	신용카드 한도, 이용금액, 체크카드 이용금액 등 32개 변수
연체 및 채무불이행 기업여신 정보 (개인사업자)	미해제연체 총 금액, 분기중 신규연체, 채무불이행(신용관리대상) 등록 총건수 및 총금액 등 총 51개 변수 업종, 업권, 상품, 신용공여잔액, 만기도래액, 신용공여한도, 담보잔액 등 총 26개 변수

자료: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가계부채와 주택특성 분석 및 통계개발연구, 통계개발원, 변준석·윤병우(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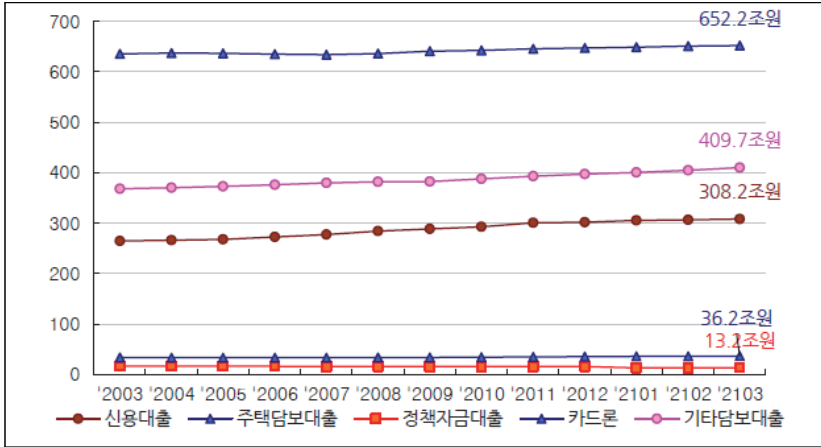
마. 기타 민간신용정보회사 DB

- 국내 은행권에서 신용조회를 활용할 때 활용하는 NICE, KCB 등과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의 가계대출정보도 있음.
- 민간의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의 신용등급, 대출잔액, 주택담보대출잔액, 연소득, 연령, 성별,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카드 혹은 대출거래 신청 시 개인이 기록한 주소, 직장 정보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활용하면 연령대별, 직업별, 신용등급별, 거주주택면적별 등 개인 속성별 평균 소득수준과 대출금액 등을 추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B는 연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소득과 대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사, 캐피탈 등)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임차보증금대출 제외)을 KCB 자료로 확인하면, 은행은 약 500조, 조합이 약 100조로 대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6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그림 2-1]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상품별 대출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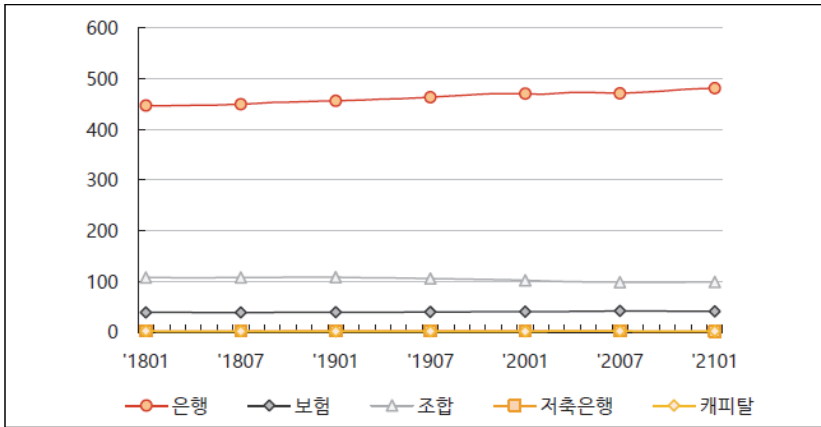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KCB 내부자료

[그림 2-2]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업권별 주택담보대출잔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KCB 내부자료

제4절 공적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 공적 영역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에 따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현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주택도시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 공적 영역에서의 중도금 대출 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중도금, 연계중도금, 집단중도금,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을 통해 지원
- 전월세자금 대출 제도
 - 주택도시시기금 또는 은행 재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함.
 -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현황
 - 주택담보대출 현황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용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자금 용도를 제외하고 주택구입, 중도금, 전세자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62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14〉 주택유형별 대출금액: 보증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단위: 십억원)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계
2016	611	114	18,786	167	19,678
2017	647	84	16,497	194	17,421
2018	561	98	15,435	150	16,244
2019	1,883	283	28,441	393	31,000
2020	3,083	551	22,475	559	26,668

주: 보증자리론 판매기관

- SC,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KEB하나,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 국제, 대명, 디케이, 동부, 드림, 비엔케이(구 비에스), 아주, 오에스비, 진주, 청주, 키움, 평택, 한국투자
- 삼성생명,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houstat.hf.go.kr>에서 2020.6.30. 인출)

〈표 2-15〉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현황

(단위: 십억원)

		2019년		2020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개인보증	구입	92,863	2,039	125,151	2,703
	전세	630,692	40,326	717,973	50,702
	중도금	53,686	8,474	45,285	6,627
	임대보증금 반환	110	3	43	1
	개량	10,060	100	10,144	103
	소계	787,411	50,942	898,596	60,13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0	1,597	294
사업자보증		25,295	3,635	28,111	4,229
계		812,706	54,578	928,304	64,659

주: 개인보증: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구입,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임차,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보증

- 구입: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기에 대한 보증(건축+구입)
-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기에 대한 보증(전세+월세+구상채권회수보증)
- 중도금: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금 등 분양대금 납부에 소요되는 자기에 대한 보증
- 개량자금: 주택수요자가 건축허가 등을 얻어 주택을 수선, 증·개축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에 대한 보증

- 임대보증금반환자금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위한 보증
- 사업자보증 :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houstat.hf.go.kr>에서 2020.6.30. 인출)

〈표 2-16〉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 현황

(단위: 십억원)

		2019년		2020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개인보증	구입	323,130	5,318	361,513	5,977
	전세	1,107,827	64,183	1,221,989	78,475
	중도금	100,888	15,291	98,814	14,897
	임대보증금 반환	134	4	121	3
	개량	29,543	182	37,187	215
	소계	1,561,522	84,978	1,719,624	99,56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591	293	
사업자보증		58,239	4,873	53,281	5,890
계		1,619,761	89,851	1,774,496	105,752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houstat.hf.go.kr>에서 2020.6.30. 인출)

6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2-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주택자금대출 규모

(단위: 십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금융기관별	주택도시자금	91,714	99,114	102,532
	시중은행	267,723	303,987	335,788
	지방은행	32,369	34,934	40,644
	특수은행	77,657	92,111	105,530
	외은지점	474	538	792
자금용도별 (개인)	구입	224,606	246,575	262,940
	중도금	48,497	43,023	43,676
	전세	89,357	116,775	147,357
	기타	34,490	43,037	44,356
자금용도별 (사업자)		72,986	81,273	86,958
계		469,936	530,683	585,286

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금 규모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제3조, 2007.7.1 시행)으로 출연대상 주택자금대출의 정의 및 범위가 변경 적용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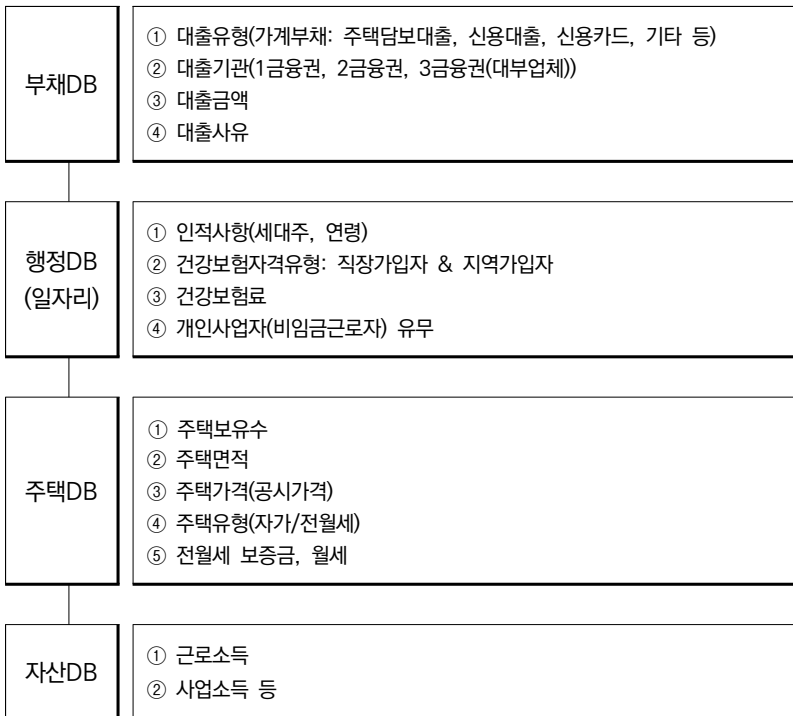
-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특수은행 :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은행
- 외은지점 : 미쓰비시 도쿄UFJ, 중국, 중국농업, 중국광대, 중국공상, 파키스탄 국립, 홍콩상하이, 델라트은행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houstat.hf.go.kr>에서 2020.6.30. 인출)

제5절 가계금융부채의 연계 데이터 사례

□ 가계 금융부채의 보험료 공제의 대상과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부채자료, 일자리를 포함한 행정자료, 주택자료, 자산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 가계금융부채 관련 필요 자료 예시



〈표 2-18〉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비교

	관련지표	장단점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 부채 - 부동산자산 - 가처분소득 - 순자산 - 가구특성	- 가구단위로 가구특성 이용 가능하나 정확성의 한계 - 가구 소득, 자산 항목 구체적 - 부채 전체에 대한 연체 제한적 활용 가능
주거실태조사	- 자산, 부채 - 부동산자산 - 순자산 - 가구특성 - 주택관련 부채 연체	- 가구단위로 가구특성 이용 가능하나 정확성의 한계 - 주택마련 및 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연체여부 파악 가능 - 주택관련 부채의 연체여부 확인 가능
개인신용정보(KCB)	- 다중채무 - 연체율, 연체차주 - 부채액 - 소금대비 총부채상환비율(DSR) - 소득대비부채비용(LTI) - 만기구조(일시상환, 분할상환)	- 차주단위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가능하나 가구특성 한계 - 주택가격 자료의 한계, 소득, 소비 지표 추정 필요
주택금융공사 자료	- 대출실행일, 현재연체여부, 현재연체일수 - 대출원금, 대출금리, 대출만기일 - DTI, 신용등급 - 담보주택유형, 담보평가금액 LTV	- 차주단위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가능하나 가구특성 한계 -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용 주택담보대출 DB 미완

자료: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태리 등(2017)

가. 통계청 부채DB

□ 통계청 빅데이터과에서 개인사업자(기업) 부채DB를 기획하여 추진

- 통계청(빅데이터통계과)은 기업통계등록부(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와 민간 신용평가기관(KCB)의 부채 정보를 연계한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한승훈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 통계프리즘. 2020년 봄호)

-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는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부채 정보를 연계한 것으로 연계율은 95~96%. 2014~2017년은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2018년은 분기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

▣ 개인사업자 부채 DB(권태구 등, 2019.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분석. p3)

개인사업자의 대출유무, 규모, 대출유형(가계/기업, 신용/담보), 업권(은행/비은행)별 특성, 연체 현황 등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사업활동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한 영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주요항목에는 기업특성(사업주, 기업체 특성), 부채 및 연체 특성, 정책 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DB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통계기업등록부(SBR), KCB 금융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었다.(각주)

각주)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주택소유통계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적, 가구원, 자녀 수, 거주형태, 주택면적 등 가구특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기업)가 보유한 가계대출(은행권, 비은행권)과 개인사업자대출(은행권, 비은행권)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2020.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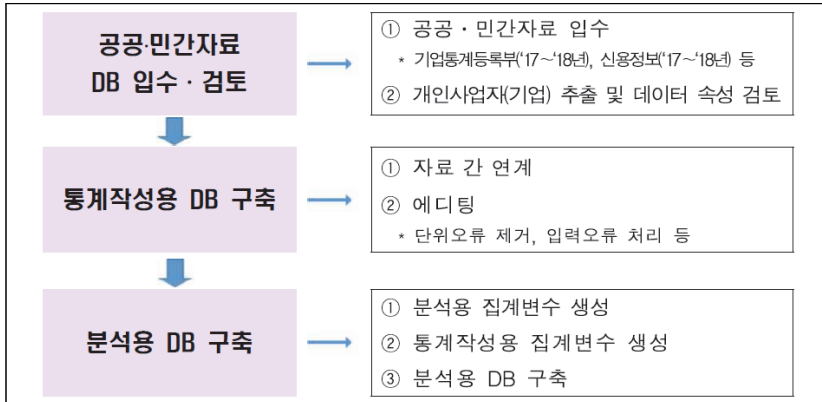
○ 작성대상

- 기업통계등록부(SBR)* 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기업)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기업체)를 포괄하는 경제통계 부문 통합모집단

○ 활용자료

- 기업통계등록부(SBR), 신용(부채)정보(민간 신용정보회사)

[그림 2-4]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 구축 및 통계 작성 과정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2020.10.29.)

- 부채자료가 신용정보원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KCB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이므로, 공식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연계데이터의 비식별코드를 풀어 연계작업을 수행하는데,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됨.

나. 통계청 내부 자료의 연계

- 자료연계의 제한점
 - 통계청 내부의 개별 DB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키(매칭변수)가 없음.
 - 대신에, 활용가능 연계키는 주소, 생년월일 등과 같은 변수 활용
 - 신용정보원 자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야 함. 통계청에서 입수한 신용정보원자료(전수가 아닌 일부 표본자료 1,200만건) 활용 협조는 어려움.

부채DB (신용정보원)	①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부채DB 입수 및 관리 ② 10개 변수: 기관사항(대출기관코드), 대출금액, 담보유형, 만기일자, 연체금액 등 ⇒ 특정 통계목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있어, 해당통계목적 이외에는 자료제공 불가	통계청 행정자료 관리과
행정DB (국세청 등)	① 인적사항(세대주, 연령) ② 개인사업자(비임금근로자) 유무 ③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건강보험자격유형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구분 불가	통계청 행정자료 관리과
주택DB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작성 ① 통계청의 인구, 가구, 주택DB와 국토부 및 행자부의 건축물소유자대장,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등의 관련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통계청 행정통계과

다. 신용정보원 DB

- 신용정보원 빅데이터센터에서 개인신용정보 표본DB제공
 - 표본DB: 모수의 5%수준(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DB에 등록된 약 4,000만명의 5%인 약 200만명)
 - 맞춤형DB: 이용자 연구목적에 따라 맞춤형공한 데이터로, 모수의 20%수준
- 제공내용: 일반신용정보
 - 차주일련번호, 생년, 성별,

- 대출정보: 기준년월, 차주일련번호, 금융기관코드, 기관일련번호, 대출상품코드(단장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 구분), 대출년월, 대출금액.
- 연체정보: 기준년월, 차주일련번호, 금융기관코드, 기관일련번호, 연체유형 등
- 연계키: 차주일련번호로 연계
- 금융기관: 은행, 상호금융(농·수협 지역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캐피탈·할부·리스·신기술사, 상호저축은행, 기타(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등)

대출상품 분류	대출상품 분류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17.9월 신설)	신차할부
예·적금담보대출	중고차할부
유가증권(주식,채권,펀드등)담보대출	기타할부
주택담보대출	금융리스
주택외부동산(토지,상가등)담보대출	운용리스
지급보증(보증서)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보급자리론	학자금지급보증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17.9월 신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19.3월 신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라. 주택소유DB

□ 주택소유통계

- 행정자료로 제공받는 개인식별자료(주민등록번호 등)는 별도의

암호화체계에 의한 암호화과정을 거쳐 수집

○ 연계 방법

- 건축물소유자 대장의 '소유자 식별번호'를 주택DB에 연계(매칭변수: 건축물관리번호)
- 미연계의 경우: 재산세 자료 상 '납세자식별번호'를 주택DB에 연계
- '소유자식별번호'를 활용하여 인구DB 및 주민등록자료 연계 (매칭변수: 소유자식별번호, 개인단체식별번호)

○ 주요 통계 내용

- 개인의 주택소유 현황, 소유 주택의 자산 가액별 현황

자료명	자료출처	내용	비고
주택DB	통계청	우리나라 모든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 2015년 주택총조사 및 신축 변형·별실에 대한 갱신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에서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주택, 인구, 가구 DB를 구축
인구DB	통계청	우리나라 모든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출입국자료, 외국인등록자료 등	
가구DB	통계청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출입국자료, 외국인등록자료 등	
건축물소유자 대장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행정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에 요청, 행정자료포털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 요청⇒승인⇒추출
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개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자료 보유 부처로부터 행정정보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자료 수집
재산세	행정안전부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민등록부	행정안전부		

마. 주택담보대출 데이터 연계 사례

- 이태리 등(2017)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신용정보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 특성 및 연체위험을 분석함.
 - 주택담보대출은 민간의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취급되며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금 등 공적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므로 민간과 공공을 포함.
 - 또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로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
 - 미시자료 활용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거소비실태조사와 같은 가구단위의 설문조사 자료와 KCB의 신용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자료와 같은 차주단위의 전수자료 분석
 - KCB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정보 자료 등 활용
- 권태구 등(2019)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를 구축하기 위해 통계기업등록부(SBR), KCB 금융빅데이터(민간신용평가기관) 등을 연계하여 활용

〈표 2-19〉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의 주요 항목

범주	변수	출처
사업주	성, 연령	SBR
기업체	산업(세세분류), 지역(시·도, 시·군·구), 개·폐업 일자, 중소기업구분, 매출액, 종사자 수	SBR
가구특성	국적, 가구원 자녀 수, 거주형태, 주택면적	등록센서스 주택소유
부채	대출×잔액 건수×유형별(신용 담보 기타) 업권별(은행 비은행)	KCB
연체	대출×잔액 건수×유형별(신용 담보 기타) 업권별(은행 비은행)	
정책	대출 연체×건수 잔액×정책(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자료: 권태구 등(2019)

〈표 2-20〉 통계기업등록부(SRB)의 주요 기초자료

기관	자료명	용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체, 기업체 기본사항
	부가세자료,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	사업체, 기업체 매출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체, 기업체 종사자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고용보험_피보험자 및 상실자	조사 - 행정 연계, 매출액 및 종사자 배분
통계자료	전국사업체조사(행정, 조사 연계), 경제총조사(행정, 조사 연계), 광공업(참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업활동조사(이상 참고)	
행정통계	일자리 통계, 영리법인 통계, 기업생멸 통계	산업분류 일치(기업별)

주: 통계기업등록부(SBR)는 기본적으로 기업단위이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융복합하여 우리나라 경제모집단(기업체 및 사업체 단위)을 연도별로 구축.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단위(기업체, 사업체)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로 관리하여 경제통계의 통합 모집단 및 표본 추출용으로 관리하는 DB

'16년 7월 2014년 기준 통계기업등록부를 시범 구축했으며, '17년 4월 외부 제공을 시작함.

자료: 권태구 등(2019)

- 윤병우(2019) 우리나라 가계부채수준과 부채가구 특성. 통계프리즘. 2019년 여름호.
-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가구 재무현황과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부채보유가구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준상(2019)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이용한 가구의 부채 건전성 분석. 통계프리즘. 2019년 가을호.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가계부채의 이동성 및 건전성을 분석

제6절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가.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 주거실태조사,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등 조사에 기반한 자료는 표본조사로 개인의 실거주를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주택소유 통계와 주택총조사 통계의 경우 행정자료인 전수조사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주민등록 주소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주택총조사의 경우 2010년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여 주민등록 정보와 연계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10% 표본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거에 대한 실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공시자료와 주택소유 통계의 기반이 되는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소유 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임대) 관련 통계시스템인 렌트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기정보광장 등의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에 기반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거래신고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이며, 신고대상이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임차료 30만원 이상이므로 임차인의 모든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암묵적 재계약 등으로 인해 실제 DB가 구축되어 활용하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공시자료와 연계할 경우 소유 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주거관련 DB와 기타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방안

- 실거주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에 기반하고 있는 주거관련 DB를 활용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둘 경우 정확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다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점유하고 있는 주택간 차이가 있어 실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 다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양도세 혜택 등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자녀의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전체 세대 또는 일부 세대원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리거주가 힘든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부동산원의 RTMS, RHMS DB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마이홈, 렌트홈 DB,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및 확정일자 정보, 지방세 DB, 법원의 등기정보, 국세청의 국세 DB, 국토부의 주거급여 DB, 보건복지부의 복지 DB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와 함께 법원의 등기정보를 연계하여 등기정보에 기대된 거래일자와 주민등록 정보 갱신 내용을 연계하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차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주민등록정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납부자 DB,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료 납부자 DB 등을 연계하거나 행정조사자료인 빈집 통계와 주택소유통계 원시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정확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정보와 함께 민간의 여타 주소 확인이 가능한 DB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
- 민간 가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이용자 DB, 개별 통신사의 통신이용자 DB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민간 보유 DB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이 민간 보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NICE, KCB 등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합 DB의 경우 NICE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매칭하여 활용





제3장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 3 장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가.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 2019년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은 3천7백만명(72.4%), 지역가입은 1천4백만명(27.6%)임.
-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1천8백만명(35.3%)이며, 이들의 피부양자는 약 1천9백만명(37.2%)에 해당함.
- 지역가입 세대주는 약 8백만명(16.3%)이며, 지역가입 세대원은 약 6백만명(11.3%)임.

〈표 3-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천명, 천세대, %)

		2015	2016	2017	2018	2019	(%)
건강 보험	직장	36,225	36,675	36,899	36,990	37,227	72.4
	-가입자	15,760	16,338	16,830	17,479	18,123	35.3
	-피부양자	20,465	20,337	20,069	19,510	19,104	37.2
	지역	14,265	14,089	14,042	14,082	14,164	27.6
	-세대주	7,653	7,665	7,786	8,053	8,377	16.3
	-세대원	6,612	6,423	6,256	6,030	5,787	11.3
	소계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100.0
의료급여		1,544	1,509	1,486	1,485	1,489	-

주: 연도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이종가입자 포함, 지역세대수는 비가입세대주 세대포함
자료: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으며, 각각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됨.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율은 50%가 차감됨.
 -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봉급·임금·수당 등의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은 제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때에,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퇴직금, 현상금 변역 및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단, 국외 소득 제외)이 포함됨.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임.
-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법 제73조) 1천분의 80의 범위에 해당됨.
 - 보험료율은 2020년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6.67%, 지역가입자는 195.8원, 장기요양 10.25%이었으며, 2021년 직장가입자 6.86%, 지역가입자 201.5원, 장기요양 11.52%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50:50으로 부담하게 되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의 경우 가입자와 국가에서 50:50으로 부담함.

○ 보수월액보험료

-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소득월액보험료

- (2018년 6월 이전) 산정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개월} × 건강보험료율
- ('18.7월 이후) 산정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법 제72조)

- '02.1.부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점수'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또는 감액) 보험료를 차감하여 부과
- 2018. 7월 부터: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 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기본보험료를 적용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지역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201.5원, 2021년기준)
 -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점수

당 금액(201.5원, 2021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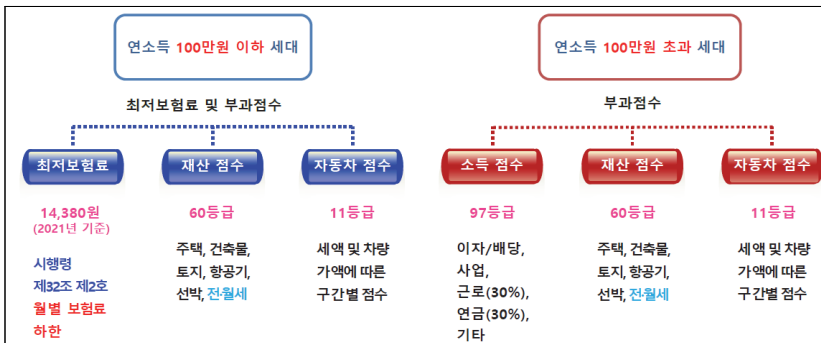
- 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점수 대신 최저보험료 14,380원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세대 단위 부과

- 보험료 부과점수는 같은 세대에서 지역가입자 세대구성원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합하여 부과요소별로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그림 3-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소득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 4])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후 재산금액 등급별 점수 적용

- 전월세금액: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기본공제액(300만원)}*100분의 30

〈표 3-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표: 97등급

(단위: 만원, 점)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100 ⇒ 13,100원				
1	100 ~ 120	82	36	3,240 ~ 3,430	1,038
2	120 ~ 140	91	37	3,430 ~ 3,640	1,066
3	140 ~ 160	100	38	3,640 ~ 3,860	1,095
4	160 ~ 180	109	39	3,860 ~ 4,100	1,130
5	180 ~ 200	118	40	4,100 ~ 4,350	1,200
6	200 ~ 240	132	41	4,350 ~ 4,610	1,272
7	240 ~ 280	150	42	4,610 ~ 4,890	1,349
8	280 ~ 320	168	43	4,890 ~ 5,190	1,431
9	320 ~ 360	186	44	5,190 ~ 5,500	1,518
10	360 ~ 400	204	45	5,500 ~ 5,840	1,610
11	400 ~ 440	222	46	5,840 ~ 6,190	1,708
12	440 ~ 500	245	47	6,190 ~ 6,560	1,810
13	500 ~ 600	281	48	6,560 ~ 6,960	1,920
14	600 ~ 700	326	49	6,960 ~ 7,380	2,036
15	700 ~ 800	371	50	7,380 ~ 7,840	2,161
16	800 ~ 900	416	51	7,840 ~ 8,320	2,294
17	900 ~ 1,000	462	52	8,320 ~ 8,820	2,434
18	1,000 ~ 1,100	507	53	8,820 ~ 9,360	2,581
19	1,100 ~ 1,200	552	54	9,360 ~ 9,930	2,739
20	1,200 ~ 1,300	580	55	9,930 ~ 10,600	2,915
21	1,300 ~ 1,400	609	56	10,600 ~ 11,200	3,095
22	1,400 ~ 1,500	637	57	11,200 ~ 11,900	3,280
23	1,500 ~ 1,600	666	58	11,900 ~ 12,600	3,479
24	1,600 ~ 1,700	695	59	12,600 ~ 13,400	3,692
25	1,700 ~ 1,800	723	60	13,400 ~ 14,200	3,919
26	1,800 ~ 1,900	752	61	14,200 ~ 15,000	4,146
27	1,900 ~ 2,020	780	62	15,000 ~ 15,800	4,373
28	2,020 ~ 2,140	809	63	15,800 ~ 16,600	4,600
29	2,140 ~ 2,270	838	64	16,600 ~ 17,400	4,827
30	2,270 ~ 2,410	866	65	17,400 ~ 18,300	5,069
31	2,410 ~ 2,560	895	66	18,300 ~ 19,200	5,324
32	2,560 ~ 2,710	923	67	19,200 ~ 20,100	5,580
33	2,710 ~ 2,880	952	68	20,100 ~ 21,100	5,850
34	2,880 ~ 3,050	981	69	21,100 ~ 22,100	6,134
35	3,050 ~ 3,240	1,009	70	22,100 ~ 23,200	6,432

86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71	23,200 ~ 24,400	6,758	86	47,600 ~ 49,900	13,843
72	24,400 ~ 25,600	7,099	87	49,900 ~ 52,400	14,525
73	25,600 ~ 26,800	7,440	88	52,400 ~ 55,200	15,277
74	26,800 ~ 28,200	7,809	89	55,200 ~ 58,400	16,129
75	28,200 ~ 29,500	8,192	90	58,400 ~ 62,200	17,123
76	29,500 ~ 31,000	8,590	91	62,200 ~ 66,800	18,316
77	31,000 ~ 32,500	9,016	92	66,800 ~ 72,400	19,764
78	32,500 ~ 34,100	9,456	93	72,400 ~ 79,200	21,524
79	34,100 ~ 35,800	9,925	94	79,200 ~ 87,500	23,668
80	35,800 ~ 37,600	10,421	95	87,500 ~ 97,500	26,267
81	37,600 ~ 39,400	10,933	96	97,500 ~ 114,000	30,029
82	39,400 ~ 41,300	11,458	97	114,000 초과	32,372
83	41,300 ~ 43,300	12,012			
84	43,300 ~ 45,400	12,594			
85	45,400 ~ 47,600	13,204			

□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
(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라 등급별
로 구분하여 산정
 - 4,000만원 초과하거나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
자동차만 부과

〈표 3-3〉 자동차점수

등 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 기 량 등	사용연수별 가액률 및 결정 점수		
			3년 미만 100%	3년 이상 6년 미만 80%	6년 이상 9년 미만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모든 차량	28	23	17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 재산 기본공제 산정방식

- 재산금액 = 재산과표(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 기본공제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만원 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 30% 적용 후 만원 미만 금액은 절상함
- 재산세 과세표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88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3-4〉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표

(단위: 만원, 점)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1	0 ~ 450	22	31	38,800 ~ 43,200	757
2	450 ~ 900	44	32	43,200 ~ 48,100	785
3	900 ~ 1,350	66	33	48,100 ~ 53,600	812
4	1,350 ~ 1,800	97	34	53,600 ~ 59,700	841
5	1,800 ~ 2,250	122	35	59,700 ~ 66,500	881
6	2,250 ~ 2,700	146	36	66,500 ~ 74,000	921
7	2,700 ~ 3,150	171	37	74,000 ~ 82,400	961
8	3,150 ~ 3,600	195	38	82,400 ~ 91,800	1,001
9	3,600 ~ 4,050	219	39	91,800 ~ 103,000	1,041
10	4,050 ~ 4,500	244	40	103,000 ~ 114,000	1,091
11	4,500 ~ 5,020	268	41	114,000 ~ 127,000	1,141
12	5,020 ~ 5,590	294	42	127,000 ~ 142,000	1,191
13	5,590 ~ 6,220	320	43	142,000 ~ 158,000	1,241
14	6,220 ~ 6,930	344	44	158,000 ~ 176,000	1,291
15	6,930 ~ 7,710	365	45	176,000 ~ 196,000	1,341
16	7,710 ~ 8,590	386	46	196,000 ~ 218,000	1,391
17	8,590 ~ 9,570	412	47	218,000 ~ 242,000	1,451
18	9,570 ~ 10,700	439	48	242,000 ~ 270,000	1,511
19	10,700 ~ 11,900	465	49	270,000 ~ 300,000	1,571
20	11,900 ~ 13,300	490	50	300,000 ~ 330,000	1,641
21	13,300 ~ 14,800	516	51	330,000 ~ 363,000	1,711
22	14,800 ~ 16,400	535	52	363,000 ~ 399,300	1,781
23	16,400 ~ 18,300	559	53	399,300 ~ 439,230	1,851
24	18,300 ~ 20,400	586	54	439,230 ~ 483,153	1,921
25	20,400 ~ 22,700	611	55	483,153 ~ 531,468	1,991
26	22,700 ~ 25,300	637	56	531,468 ~ 584,615	2,061
27	25,300 ~ 28,100	659	57	584,615 ~ 643,077	2,131
28	28,100 ~ 31,300	681	58	643,077 ~ 707,385	2,201
29	31,300 ~ 34,900	706	59	707,385 ~ 778,124	2,271
30	34,900 ~ 38,800	731	60	778,124 초과	2,341

라.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 부과기준

- 부과주체: 직장(인별 부과 사업장 합산 고지), 지역(세대 단위 부과)
- 부과소득: 보수월액(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부과 시점 현재 소득), 소득월액 및 지역보험료(연계 시점 전년도 확정 소득)

〈표 3-5〉 연도별 건강보험료 상·하한 금액 및 가입자 수

(단위: 원, 명)

구분	보수월액		소득월액		지역보험료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2018	6,193,140	17,460	3,096,570	2,000	3,096,570	13,100
2019	6,365,520	18,020	3,182,760	2,000	3,182,760	13,550
2020	6,644,340	18,600	3,322,170	2,000	3,322,170	13,980
2021	7,047,900	19,140	3,523,950	2,000	3,523,950	14,380

구분	보수월액 (가입자 수)	
	상한	하한
2018	3,096,570	8,730
2019	3,182,760	9,010
2020	3,322,170	9,300
2021	3,523,950	9,570

자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부과액은 59조 1,328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함.
- 직장보험료는 50조 7,712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5.9%를 차지함.

9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 지역보험료는 8조 3,616억원으로, 총 부과액 14.1%를 차지함.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09,558원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0,152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6,160원을 부과함.

〈표 3-6〉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억원,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료 (억원)	소계	443,298	475,931	504,168	538,965	591,328
	직장	369,548	399,446	424,486	459,221	507,712
	지역	73,750	76,485	79,682	79,744	83,616
세대당 월 보험료 (원)	소계	94,040	98,128	101,178	104,201	109,558
	직장	100,510	104,507	107,449	112,635	120,152
	지역	80,876	84,531	87,458	85,546	86,160

주: 결산기준, 세대당 월 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사용자부담금 제외)
자료: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3-7〉 건강보험수입 및 누적법정준비금 현황

(단위: 억원)

	보험료	정부지원금			기타	총수입 (계)	누적법정 준비금
		소계	국고지 원금	담배부 담금			
2008	249,730	40,262	30,023	10,239	7,879	297,871	22,278
2009	261,661	46,828	36,566	10,262	6,515	315,004	22,278
2010	284,577	48,561	37,930	10,631	6,351	339,489	9,593
2011	329,221	50,283	40,715	9,568	8,106	387,611	15,600
2012	363,900	53,432	43,359	10,073	7,405	424,737	45,757
2013	390,319	57,994	48,007	9,986	23,746	472,059	45,757
2014	415,938	63,149	52,958	10,191	26,068	505,155	82,204
2015	443,298	70,902	55,717	15,185	18,721	532,921	128,073
2016	475,931	70,917	52,003	18,914	17,751	564,599	169,801
2017	504,168	67,747	48,736	19,011	16,266	588,181	200,657
2018	538,965	70,704	51,903	18,801	17,489	627,158	207,734
2019	591,328	77,672	59,589	18,082	22,733	691,733	205,955

주: 당해년도결산기준, 기타) 결산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액

자료: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3-8〉 건강보험지출 현황

(단위: 억원)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	총지출(계)
	요양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소계			
2008	259,177	38	1,482	5,846	0	266,543	6,720	9,470	282,733
2009	292,285	1	6	7,088	1,029	300,409	6,597	4,886	311,892
2010	328,284	0	2	8,014	1,192	337,493	6,751	5,019	349,263
2011	347,828	-	1	8,808	1,664	358,302	6,112	8,173	372,587
2012	364,123	-	1	9,585	2,104	375,813	6,144	9,563	391,520
2013	384,398	-	1	9,968	2,376	396,743	6,309	9,601	412,653
2014	414,914	-	0	11,014	2,347	428,275	6,419	12,831	447,526
2015	442,654	-	0	12,647	2,301	457,602	6,233	17,786	481,621
2016	493,987	-	0	14,009	2,154	510,149	6,742	20,517	537,408
2017	531,967	-	0	15,082	1,868	548,917	7,297	24,011	580,226
2018	614,234	-	-	15,562	1,888	631,683	7,636	20,465	659,783
2019	671,304	-	0	16,690	1,973	689,966	8,861	22,146	720,972

주: 당해년도결산기준, 기타=사업경비(11.6%)+사육관리비(1.3%)+타기관부담금(18.7%)+기타(68.3%)
 자료: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제2절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의 연계를 모색하였으나, 개인정보, 기관별 규정 등에 의한 자료의 확보 한계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국가통계로,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통계임.

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

□ 통계의 작성 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시점 기준

- 가구구성, 자산 및 부채: 특정시점(예, 2019년 3월 31일)
- 소득 및 지출, 원리금상환액: 1년간(예, 2018년 1월1일~12월31일)
- 담당: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조사항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시도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샘플 수: 약 2만가구

〈표 3-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구분		주요 항목
가구 구성	가구주 및 가구원	가구원 수 등
자산	실물자산	거주주택 종류, 주거용 면적, 현재시가, 임대보증금, 월세, 거주주택의 보유부동산 등
	- 금융자산	저축, 펀드, 공적연금 등
	금융자산 운용	여유자금 운용 등
	부동산 운용	부동산 투자 여부 등
부채	-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할부금융 및 리스 등 임대보증금
	부채상환 능력	부채규모, 상환방법 등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계 지출	비소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주요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료: 통계청(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행정자료 활용 현황

-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소득 및 지출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결과(응답거부 및 부정확한 응답 등)를 보완하고 있음
- 행정자료는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적용의 일부 제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통계법시행령 제52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법률적 해석에 근거함.

9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3-10〉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조사항목		행정자료	행정보유기관	
소득	근로소득	-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 국세청, 보건복지부	
	사업소득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 국세청	
	재산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 국세청
		임대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	- 국세청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 연금지급액	- 각 연금공단 등
		기초연금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등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지출	세금	소득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국민연금 기여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타연금 기여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각 연금공단 등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 방법

- 연계키: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등에 기반한 고유정보 활용하여 연계키로 활용
 -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귀모형에 의한 ratio imputation 적용하여 보정

□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DB 제한점

- 조사가구의 건강보험자격유형에 대한 직장/지역가입자 유무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가구단위가 조사의 기본단위이므로, 개인단위의 근로활동에 대

한 소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조사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지역가입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연계구축이 제한됨.

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정 방법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가구는 가구주의 건강보험자격유형에 대한 직장/지역가입자 유무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역가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정할 필요가 있음.

〈표 3-1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2020년 기준

	(명)	(%)	(누적%)
상용근로자	6,838	37.85	37.85
임시·일용근로자	2,232	12.36	50.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22	4.00	54.2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181	17.61	71.82
무급가족종사자	14	0.08	71.89
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등)	227	1.26	73.15
기타(무직자, 가사, 학생 등)	4,850	26.85	100.00
계	18,064	100.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가구주 기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샘플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41.88%, 임시·일용근로자는 11.96%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9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6.48%, 기타종사자 1.35%, 무급가족종사자 0.09% 등으로 나타남.

〈표 3-12〉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샘플가중치 적용한 결과

	(명)	(%)	(누적%)
상용근로자	8,496,816	41.88	41.88
임시·일용근로자	2,426,669	11.96	53.8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52,499	4.20	58.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344,923	16.48	74.52
무급가족종사자	18,133	0.09	74.61
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등)	273,423	1.35	75.96
기타(무직자, 가사, 학생 등)	4,878,322	24.04	100.00
계	20,290,787	100.00	

□ 종사상 지위에 대한 정의

- 개인사업자: 국세청(세법)에서는 사업주체별 형태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
- 자영업자(통계청)
 -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의 하나
 -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를 임금/비임금근로자로 구분,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 비임금근로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의 이윤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구분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

□ 지역가입자 대상자 선정 및 추정

- 지역가입자는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
- 상용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하고 제외

지역 가입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하고 제외 -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
분석 대상자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지역가입자의 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적용하기 위한 시물레이션 모형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영역별 분포(%)를 적용하여 모형을 구축함.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 소유유형 및 금융부채에 관한 자료를 연계한 시물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부채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도 시행 이전에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금융부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부채 현황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시물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건강보험DB와 같이 전수 데이터는 아니지

만, 샘플링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따라 금융부채와 관련한 현황 및 규모를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를 재산정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자료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규모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 산정
-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세대수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영역별 분포(%)를 적용함.
 - 1주택 실거주자, 주택이 없는 전월세 거주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비율 적용
 - 1주택 세대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수×(가계금융복지조사) 1주택실거주자의 비율(%)
 - 전월세 세대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수×(가계금융복지조사) 전월세거주자의 비율(%)
- 자산규모 산출 방식
 - 전체 자산=거주주택자산+거주주택이외부동산+기타 실물자산
 - 재산기본공제 적용
 - 1주택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택 현가액 기준
 - 주택과세표준=주택현가액×0.7×0.6
 - 전월세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월세 보증금 기준
 - 전월세=(보증금+(월세×40)×0.3-재산기본공제
 - 월세 대리지표=주거비×0.8

재산점수 산정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규모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산정
세대수 분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 실거주자, 주택이 없는 전월세 거주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비율 적용 - 1주택 세대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수×(가계금융복지조사) 1주택실거주자의 비율(%) - 전월세 세대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수×(가계금융복지조사) 전월세거주자의 비율(%)
자산규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자산=거주주택자산+거주주택이외부동산+기타 실물자산 - 재산기본공제 적용 - 1주택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택 현가격 기준 주택과세표준=주택현가격×0.7×0.6 - 전월세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월세 보증금 기준 전월세=(보증금+(월세×40)×0.3-재산기본공제 월세 대리지표=주거비×0.8
부채규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용도=주택구입 & 거주주택 담보 - 대출용도=전월세 보증금 - 1,2금융권 및 3금융권, 신용대출로 구분

제3절 분석 결과

가. 기초통계 분석 결과

-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을 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약 63.6%이며, 이 중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약 57.7%이었음.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 484만원이었고,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 2,3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3〉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비율(%)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	금융부채	57.7	10,484
	- 담보대출	38.5	12,313
	- 신용대출	22.3	3,892
	소계	63.6	12,970
부채 미보유	소계	36.4	-
계		100.0	-

주: 샘플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부채에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구입, 개인적 거래, 연금형 부채(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포함됨.

□ 거주주택의 유형을 보면,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60.9%,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13.8%,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18.3%,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1.1%, 그리고 사택 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6.0% 이었음.

〈표 3-14〉 거주 주택 현황

(단위: %)

구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은퇴자, 주부 등	계	계
	상용직 고용원있는자 영업자	임시일용 고용원없는자 영업자			
자기집	22.7	30.1	47.2	100.0	60.9
전세	17.9	22.7	59.4	100.0	13.8
보증금있는 월세	25.9	34.6	39.5	100.0	18.3
보증금없는 월세	35.9	39.0	25.1	100.0	1.1
기타	44.4	27.5	28.1	100.0	6.0
	24.0	29.9	46.1	100.0	100.0

□ 가구당 주택의 소유 현황을 보면, 1주택인 경우는 36.5%이었고, 다주택 24.4%, 전월세에 거주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가입자의 경우 1주택자 36.0%, 다주택은 25.9%, 전월세에 거주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8%이었음.

〈표 3-15〉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단위: %)

구분	직장가입 (상용, 고용원있는자영)	지역가입 (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자 등)	계
1주택	38.5	34.8	36.5
전세+주택미보유	13.0	7.6	10.1
월세+주택미보유	13.6	20.2	17.2
다주택	23.9	24.8	24.4
전월세+부동산보유	8.5	6.1	7.2
기타(무상, 사택 등)	2.6	6.4	4.6
계	100.0	100.0	100.0

□ 거주 주택의 면적은 주거용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주택이면서 85㎡미만이 34.0%, 다주택이면서 85㎡미만이 18.4%이었음.

〈표 3-16〉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34.0	37.4	36.0
전세+주택미보유	9.1	2.6	10.9
월세+주택미보유	25.4	3.5	16.2
다주택	18.4	46.0	25.9
전월세+부동산보유	6.2	5.9	7.8
기타(무상, 사택 등)	6.9	4.6	3.1
계	100.0	100.0	100.0

주: 주거용 전용면적 기준

□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 등)의 주택소유 유형별 거주지 면적 분포를 보면, 1주택자가 85㎡미만이 41.5%, 전세거주자가 85㎡미만이 11.2% 등으로 분포하였음.

〈표 3-17〉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41.5	14.0	55.5
전세+주택미보유	11.2	1.0	12.2
월세+주택미보유	31.0	1.3	32.3
계	83.7	16.3	100.0

□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를 보면, 1주택자의 주택자산은 약 2억 6천만원이며, 전세거주자의 보증금은 가구당 평균 9천만원, 월세보증금은 1천 8백만원 정도였음.

〈표 3-18〉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단위: 만원)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20,741	40,759	25,784
전세보증금	8,582	16,357	9,192
월세보증금	1,699	4,571	1,816

□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보면, 1주택자는 42.1%, 전세거주자는 44.8%, 월세거주자는 60.8%이었음.

〈표 3-19〉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금융부채 보유 가구비율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42.5	40.8	42.1
전세	43.5	59.7	44.8
월세	45.3	60.8	60.8

□ 지역가입자 중에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주택가구는 30.6%, 전세거주자 중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3.2%, 월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은 11.9%이었음.

〈표 3-20〉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담보부채 보유 가구비율

(단위: %)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31.6	28.1	30.6
전세	22.0	36.8	23.2
월세	11.5	21.6	11.9

□ 지역가입자 중에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를 보면, 1주택자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담보대출한 규모는 약 9천 356만원, 3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한 규모는 약 150만원, 신용대출은 약 43만원이었음.

〈표 3-21〉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규모

(단위: 만원)

구분		85㎡미만	85㎡이상	계
1주택	담보_1,2금융권	8,341	13,337	9,356
	담보_3금융권	134	214	150
	신용대출	33	80	43
	소계	8,508	13,631	9,549
전세보증금	담보_1,2금융권	6,108	10,991	6,763
	담보_3금융권	251	-	217
	신용대출	21	-	18
	소계	6,380	10,991	6,998
월세보증금	담보_1,2금융권	2,755	8,910	3,403
	담보_3금융권	276	8,948	1,189
	신용대출	31	-	28
	소계	3,062	17,858	4,620

나. 대상자의 추정 규모

1)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1세대 1주택 및 전월세자)의 추정 규모

□ 전체 지역가입자인 약 8백만명 중에 약 4백65만명(55.7%)이 1주택을 보유하고거나 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자영업 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의 금융부채 적용대상자는 약 2백2십만명이며, 은퇴 또는 무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금융부채 적용대상자는 2백4십만명으로 추정됨.

〈표 3-22〉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1주택 보유 & 거주	전세	월세	계
경제활동	1,064	502	628	2,194
비경제 활동	1,104	520	818	2,441
계	2,167	1,022	1,445	4,635

2)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주택 면적별 분포

-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주택 면적별 분포를 보면,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 85㎡미만이 약 1백 66만명, 85㎡이상이 51만명정도 였으며, 전세거주자의 경우 85㎡미만이 약 99만명, 85㎡이상이 4만명 정도로 분포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3-23〉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주택 면적별 분포

(단위: 천명)

구분		1주택 보유 & 거주	전세	월세	계
경제활동	85㎡미만	844	475	596	1,915
	85㎡이상	220	27	32	279
		1,064	502	628	2,194
비경제 활동	85㎡미만	814	511	9	1,334
	85㎡이상	290	9	809	1,107
		1,104	520	818	2,441
계	85㎡미만	1,658	986	605	3,248
	85㎡이상	510	36	841	1,386
		2,168	1,022	1,446	4,636

3)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주택 및 전월세 보증금 규모

□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적용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할 경우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약 95%가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며 그 규모는 약 207만명에 해당됨.

〈표 3-24〉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1주택		전세		월세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수	%
-	100이하	316	14.6	655	64.1	365	25.2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1,536	70.9	367	35.9	1,083	74.7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216	10.0	0	0.0	2	0.1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43	2.0	0	0.0	0	0.0
34~	53,600~	57	2.6	0	0.0	0	0.0
	계	2,167	100.0	1,022	100.0	1,450	100.0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4)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규모

□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적용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이면서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할 경우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약 163만명이 적용대상자에 해당됨.

〈표 3-25〉 과세표준별 ·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85㎡미만		85㎡이상	
		세대수	%	세대수	%
-	100이하	284	17.1	31	6.2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1,236	74.6	300	58.9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113	6.8	103	20.2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17	1.0	26	5.0
34~	53,600~	8	0.5	50	9.7
	계	1,658	100.0	510	100.0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5) 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부채 규모

□ 재산과표별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를 추정하면, 공시지가 3억이하이면서 주택규모가 85㎡미만의 경우 약 17.3%의 세대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억원인 경우 그리고 주택규모가 85㎡미만의 경우에 2.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단위: 천명, %)

등급	과세표준금액(만원) (초과 - 이하)	85㎡미만			85㎡이상		
		세대수	%	부채보유 비중	세대수	%	부채보유 비중
-	100이하	0	0.0	0.0	0	0.0	0.0
1~23	100~18,300 (공시지가 3억)	286	86.6	17.3	53	55.3	10.4
24~30	18,300~38,800 (공시지가 6억)	40	12.0	2.4	23	24.2	4.6
31~33	38,800~53,600 (공시지가 9억)	3	1.1	0.2	5	5.7	1.1
34~	53,600~	1	0.3	0.1	14	14.9	2.8
	계	331	100.0	19.9	96	100.0	18.9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다. 모형 분석 결과

- 공시지가 9억을 기준으로 하며, 1주택자 부채적용율을 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을 30%로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적용하고 1, 2금융권의 부채만 인정할 경우, 약 1,514억원의 보험료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부채를 인정할 경우에는 약 400억원이 추가로 수입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3-27〉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부채공제후 (1,2금융)	450,011	404,168	5,833	2,289
차이	-137,158	-36,947	-5,151	-1,141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447,509	403,199	5,833	2,289
차이	-139,660	-37,916	-5,151	-1,141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1,416	419,621
차이	-9,069	-2,148	-151,378	-40,236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85,572	11,781	538,914	417,269
차이	-9,069	-3,530	-153,880	-42,588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 공시지가 6억을 기준으로, 1주택자 부채적용율을 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을 30%로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적용하고 1, 2금융권의 부채만 인정할 경우, 약 1,496억원의 보험료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부채를 인정할 경우에는 약 379억원이 추가로 수입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3-28〉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부채공제후 (1,2금융)	451,774	406,462	5,833	2,289
차이	-135,394	-34,653	-5,151	-1,141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449,272	405,492	5,833	2,289
차이	-137,896	-35,623	-5,151	-1,141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부채공제후 (1,2금융)	85,572	13,163	543,179	421,914
차이	-9,069	-2,148	-149,615	-37,942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85,572	11,781	540,678	419,563
차이	-9,069	-3,530	-152,117	-40,294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 이와 같이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원의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재산 산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또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주택이 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6억과 9억 기준의 결과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마. 시나리오 분석 결과

□ 1주택자 및 전월세자의 부채적용율을 60%로 하는 경우

○ 전월세자의 부채적용율 기존의 보험료 산정식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하였으나, 이 비율을 1주택자와 동일한 60%로 변경하여 분석하면, 주택규모를 85㎡미만으로 적용하고 1, 2금융권의 부채만 인정할 경우, 약 1,56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월세 부채적용율 30%일 때의 1,496억원보다 조금 증가함.

〈표 3-29〉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60%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85㎡미만	1주택 85㎡이상	전세 85㎡미만	전세 85㎡이상
현재*	587,169	441,115	10,984	3,431
부채공제후 (1,2금융)	451,774	406,462	2,748	2,245
차이	-135,394	-34,653	-8,236	-1,186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449,272	405,492	2,748	2,245
차이	-137,896	-35,623	-8,236	-1,186

구분	월세 85㎡미만	월세 85㎡이상	계 85㎡미만	계 85㎡이상
현재*	94,641	15,310	692,794	459,856
부채공제후 (1,2금융)	82,306	10,578	536,828	419,285
차이	-12,336	-4,733	-155,966	-40,572
부채공제후 (1~3금융+신용)	80,731	10,267	532,752	418,004
차이	-13,910	-5,043	-160,042	-41,852

주: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결과임.



제4장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제1절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제2절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제3절 주택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제4절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추정



제 4 장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제1절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가. 주거실태조사의 목적 및 연혁

-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보고서 p.1-2)
 - 우리나라 전국의 가구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조사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구조사로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조사구내에 표본가구를 추출
- 2006년 처음 실시 시작한 이후 격년으로 일반조사가 시행되어왔으며 2017년 6만가구로 표본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후 매년 일반가구 조사가 시행됨
 -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조사, 홀수해에는 정책목적에 맞는 특수가구조사(노인, 장애인, 저소득, 공공임대거주가구, 비주택거주가구 등)가 수행되어옴.

나.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 조사내용은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사항, 주거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자
-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배경문항으로 구성

〈표 4-1〉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항목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마련	현재주택 관련(거주기간, 점유형태 등), 자가 : 주택마련 관련(시기, 방법, 주택가격, 구입자금 조달방법) 차가 : 임대주택유형, 임차료, 재계약 여부 등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 위치, 건축연도, 주택구조, 주택면적, 주택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이사경험	이사경험, 이사횟수, 직전주택 관련(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면적 등)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이사계획과 이유
	주거의식조사	주택보유의식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도, 이용 및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만족 및 불만족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그 이유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가구구성, 혼인 10년 이내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급여 종류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월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동절기, 하절기, 간절기), 총자산, 부채유무 및 부채액
배경문항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특수가구 추가 조사항목	신혼부부	주택구입의향 및 예상 소요연수, 보육시설
	노인가구	주택개조 경험 유무 및 향후 개조 필요성 등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일반가구), p.8. 표 1-2 재구성

다.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가중치 설정

- 주거실태조사는 조사기준시점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를 모집단¹⁸⁾으로 함.
 - 2019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하고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신축된 아파트와 멸실된 아파트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
 - 표본규모는 6만가구로 총 6천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한 조사구 당 10가구를 조사
 - 표본배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부 층화, 세부 지역층별 표본 배분은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본추출은 층화이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추출(화물비례계통추출법), 2차 추출단위는 가구(계통추출)로 추출함
- 조사결과의 가중치는 각 표본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조정을 거쳐 산출함

라. 정책적 활용 현황

- 주거실태조사자료에는 주거와 관련된 사항, 가구의 소득을 포함한 가계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변수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앙 여러부처에서 정책기획, 시뮬레이션, 그리고

18) 섬지역과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하고 집단가구는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함

모니터링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각종 공사, 연구기관 등에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주택과 주거정책관련 연구주제를 위해 활용되어 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함

- 건보부과방식 개편을 위한 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상세 자산현황, 가구주의 연령 및 직업(종사상의 직위), 가구구성 및 가구원 수 등의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등)가 포함되어 있어서 유용한 분석자료로 활용 가능함

-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의 연구목적을 검토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가구의 특성 파악
 - 기존 건보부과 기준 변경시 대상가구의 규모 파악(지역별, 소득계층별, 연령별, 일자리유형별)
 - 건보부과를 위한 기준과 부과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음

마.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자산, 부채 유형 현황
 - 부채관련 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2〉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구분	주요 항목
자가주택 거주자	- 현 주택가격 - 주택구입자금마련 방법: 자기자금, 금융기관 융자, 금융기관이외, 사적이전 등
임차주택 거주자	- 전세보증금 - 월세 등 - 주택재계약 여부 및 보증금, 월세 등 변동사항 - 주택구입자금마련 방법: 자기자금, 금융기관 융자, 금융기관이외, 사적이전 등
주택 면적	
부채규모	-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대출금 - 부동산 소유자로서 받은 임대보증금
자산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

제2절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 가구주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8.12%, 여성이 21.88%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 가구주가 23.86%, 60대 가구주가 16.74%, 70세이상 가구주가 14.44%이었음.
- 가구주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는 2.42%로, 1~3급 장애인이 1.08%, 4~6급 장애인이 1.34%이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3.44%이었음.
- 가구원수는 평균 2.43명이었음.

〈표 4-3〉 가구주의 일반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15,608,027	78.12
	여	4,371,161	21.88
연령별	29세이하	1,486,068	7.44
	30-39세	3,166,762	15.85
	40-49세	4,329,945	21.67
	50-59세	4,766,223	23.86
	60-69세	3,344,642	16.74
	70세이상	2,885,547	14.44
장애여부	1~3급 장애인	215,445	1.08
	4~6급 장애인	266,886	1.34
	비등록장애인	108,451	0.54
	해당없음	19,388,406	97.04
기초생활수급	비수급	19,292,737	96.56
	수급	686,451	3.44
가구원수	평균	2.43	1.24
계		19,979,188	100.00

주: 샘플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44.58%, 임시·일용 근로자가 11.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43%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23.55%이었음.

〈표 4-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구분	(명)	(%)
상용근로자		8,907,106	44.58
임시·일용근로자		2,248,615	11.25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999,682	5.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083,615	15.43
무급가족종사자		34,827	0.17
비경제활동	(소계)	4,705,343	23.55
	무직	1,658,168	35.24
	은퇴자	1,374,964	29.22
	주부	1,083,027.20	23.02
	학생	427,881.47	9.09
	기타	161,302.05	3.43
계		19,979,188	10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좀 더 자세히 응답가구의 연령별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 형성주기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달라짐
 - 한창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40대 가구의 가구원 수가 평균 3.09명으로 가장 많고 29세 이하 가구는 1.32명임
 - 50대 이후 가구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1.73명임

〈표 4-5〉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 명)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평균가구원수
29세이하	78.7	12.9	5.9	2.1	0.3	100.0	1.32
30-39세	25.9	19.1	29.6	20.4	5.0	100.0	2.60
40-49세	16.8	13.8	25.1	34.0	10.2	100.0	3.09
50-59세	20.1	26.6	25.2	22.6	5.5	100.0	2.68
60-69세	25.4	46.6	19.7	6.3	2.1	100.0	2.14
70세이상	42.9	46.6	7.5	1.7	1.4	100.0	1.73
전체	29.3	27.3	21.0	17.5	4.9	100.0	2.43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지역별로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이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절반을 상회
-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는 도지역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41.5%)

〈표 4-6〉 가구주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단위: %)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계
29세이하	52.1	21.1	26.9	100.0
30-39세	53.6	19.5	26.9	100.0
40-49세	51.1	20.1	28.8	100.0
50-59세	48.5	20.9	30.6	100.0
60-69세	45.0	21.3	33.7	100.0
70세이상	39.6	18.9	41.5	100.0
전체	48.5	20.3	31.2	1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위별 분포를 보면 40-50대 가구가 4~5분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40대 가구의 4~5분위 비율은 40대 가구중 60.3%이고 50대 가구는 51% 분포
- 1분위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70세 이상인 가구(65.8%)이고 29세 이하가구도 34.4%에 해당

〈표 4-7〉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분위별 분포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29세이하	34.4	32.4	22.6	7.6	3.0	100.0
30-39세	2.9	12.3	34.1	29.2	21.4	100.0
40-49세	4.8	10.9	24.0	29.5	30.8	100.0
50-59세	10.6	17.3	21.1	22.7	28.3	100.0
60-69세	26.4	23.9	20.2	14.8	14.6	100.0
70세이상	65.8	17.2	8.6	4.7	3.7	100.0
전체	20.0	17.4	22.3	20.3	20.0	100.0

주: 무응답 제외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점유형태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상 가구의 자가점유비율이 60%를 상회
- 30대 가구는 자가(42.8%), 전세(28.3%), 보증금 있는 월세(22.6%), 보증금 없는 월세(2.2%) 순임

〈표 4-8〉 가구주의 연령별 점유형태별 분포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무상	계
29세이하	6.2	21.5	55.2	11.6	5.5	100.0
30-39세	42.8	28.3	22.6	2.2	4.2	100.0
40-49세	60.2	16.1	17.9	2.3	3.5	100.0
50-59세	64.2	12.0	17.4	3.3	3.0	100.0
60-69세	73.5	8.1	12.7	2.8	2.8	100.0
70세이상	77.1	6.3	8.7	1.7	6.2	100.0
전체	58.0	15.1	19.7	3.3	3.9	1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보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30~50대 이하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절반을 상회
- 20대 가구는 단독주택(49.3%), 아파트(18.5%), 주택이외의 거처(17.1%) 순인데 오피스텔이 주택이외의 거처에 포함되어 있음

〈표 4-9〉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유형별 분포

(단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29세이하	49.3	18.5	1.1	11.7	2.2	17.1	100.0
30-39세	19.2	61.9	1.7	10.3	0.9	5.9	100.0
40-49세	19.9	63.2	2.3	10.2	1.1	3.4	100.0
50-59세	28.6	53.8	2.6	9.3	2.2	3.4	100.0
60-69세	39.5	44.7	2.4	8.6	2.1	2.7	100.0
70세이상	54.6	34.0	2.1	6.7	1.3	1.3	100.0
전체	32.1	50.1	2.2	9.4	1.6	4.6	1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상용근로자 종사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20대 가구는 임시일용근로자 종사가 14.3%이며 비경제활동도 약 31%에 이름
- 40~50대의 가구주 가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근로 분포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임

〈표 4-10〉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분포

(단위: %)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	계
29세이하	50.2	14.3	1.4	3.3	0.0	30.9	100.0
30-39세	76.5	5.4	4.7	8.9	0.0	4.4	100.0
40-49세	65.4	7.2	7.2	14.2	0.0	6.0	100.0
50-59세	44.6	14.6	7.4	20.2	0.2	13.0	100.0
60-69세	15.6	18.4	4.3	24.5	0.4	36.8	100.0
70세이상	1.2	9.1	0.7	14.4	0.4	74.1	100.0
전체	44.6	11.3	5.0	15.4	0.2	23.6	1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규모를 보면 5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구가 약 94만가구, 60대가 78만 가구, 40대가 61만가구로 전국의 자영자가구의 규모는 약 310만 가구 규모
- 무급가족 종사가구의 규모는 전체 약 3만 5천가구

〈표 4-11〉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규모

(단위: 천가구)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	계
29세이하	847.7	241.6	23.0	55.0	0.1	521.8	1,689.2
30-39세	2,624.7	186.1	161.6	306.0	1.1	149.6	3,429.1
40-49세	2,824.8	309.4	312.2	614.1	1.8	257.5	4,319.7
50-59세	2,082.1	683.8	346.6	944.5	8.3	605.3	4,670.6
60-69세	494.5	581.0	136.4	775.0	11.5	1,163.1	3,161.6
70세이상	33.3	246.7	20.0	389.1	12.1	2,008.0	2,709.1
전체	8,907.1	2,248.6	999.7	3,083.6	34.8	4,705.3	19,979.2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일자리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절반을 상회
-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로하는 비율은 도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근로의 비율도 도지역에서 높음 (44.8%).

〈표 4-12〉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지역별 분포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계
상용근로자	52.7	20.2	27.1	100.0
임시·일용근로자	52.0	19.5	28.5	1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2.2	23.1	24.7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8.6	16.6	44.8	100.0
무급가족종사자	29.4	6.1	64.5	100.0
비경제활동	44.7	22.7	32.7	100.0
전체	48.5	20.3	31.2	100.0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응답가구의 가구주일자리 유형별 소득분위별 분포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상용근로자의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임시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절반 이상이 5분위에 속하고 78% 이상이 4~5분위에 속함
- 상용근로자는 비교적 고르게 3, 4, 5 소득분위에 분포
- 임시일용근로자 종사가구는 1, 2분위의 분포 비율이 65.9%, 무급가족종사자의 1분위 비율도 43.1%로 높음

〈표 4-13〉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분위별 분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상용근로자	1.0	12.9	28.3	28.7	29.1	100.0
임시·일용근로자	27.1	38.8	18.6	10.6	4.9	1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1.0	3.4	17.6	27.6	50.4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3.0	19.7	27.3	22.8	17.1	100.0
무급가족종사자	43.1	17.5	18.1	7.2	14.1	100.0
비경제활동	61.2	16.9	10.3	5.9	5.6	100.0
전체	20.0	17.4	22.3	20.3	20.0	100.0

주: 무응답 제외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제3절 주택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가구 자산규모 현황

□ 가구가 보유한 총 자산을 5분위로 구분하면 최하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1,460만원이었으며, 자산 5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7억 9,685만원임.

〈표 4-14〉 가구 자산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자산1분위	1,460	1,257	1,000
2분위	8,220	2,429	8,000
3분위	18,275	3,282	18,000
4분위	31,556	4,808	31,000
자산5분위	79,685	54,448	63,000
전체(평균)	27,533	36,956	18,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의 보유 자산을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면, 29세이하의 보유 평균자산은 약 5,524만원이었으며, 60-69세가 3억 3,678만원, 70세이상의 보유 평균자산은 2억 6,110만원임.

〈표 4-15〉 가구주 연령별 가구 자산 분포-수정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9세이하	5,524	14,750	1,500
30-39세	22,757	24,269	18,000
40-49세	30,814	34,287	23,000
50-59세	32,782	42,473	21,800
60-69세	33,678	43,519	21,500
70세이상	26,110	39,619	15,000
전체(평균)	27,533	36,956	18,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자산 분포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8,442만원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의 자산은 평균 2억 3,4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6〉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자산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28,442	32,315	21,000
임시·일용근로자	13,207	21,485	7,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8,279	62,877	40,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8,641	32,855	21,000
무급가족종사자	24,374	25,009	17,250
비경제활동	23,495	38,519	12,450
전체(평균)	26,311	36,311	17,000

□ 가구의 자산을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은 2억 452만원이었고, 이 중 주택 자산은 1억 8,253만원, 금융자산은 5,382만원, 기타자산은 680만원임.

〈표 4-17〉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세부 자산 분포

(단위: 만원)

	부동산	주택	금융	기타
상용근로자	20,920	19,840	6,979	795
임시·일용근로자	9,600	8,839	3,327	29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46,306	39,403	10,783	2,0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2,947	17,994	4,692	1,082
무급가족종사자	20,780	16,424	3,020	607
비경제활동	19,229	17,309	4,096	324
전체(평균)	20,452	18,253	5,382	680

나. 가구 부채규모 현황

□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31.6%에 해당하며, 가구주가 29세 이하인 경우에 부채가 있는 가구는 13.1%이었고, 가구주가 30-39세인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는 46.1%임.

〈표 4-18〉 가구의 부채 유무 현황

(단위: %)

가구주 연령	전체	부채있는 가구 비중
29세이하	7.4	13.1
30-39세	15.9	46.1
40-49세	21.7	44.8
50-59세	23.9	33.5
60-69세	16.7	23.5
70세이상	14.4	11.4
전체(평균)	100.0	31.6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로 가구당 총부채 규모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의 부채규모가 1억 8,5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용근로자 9,817만원 순임.

〈표 4-19〉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총부채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9,817	10,733	7,500
임시·일용근로자	6,098	9,257	3,4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18,563	25,995	10,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9,646	15,734	6,000
무급가족종사자	7,255	8,044	4,500
비경제활동	9,518	14,855	5,000
전체(평균)	10,076	14,197	7,000

주: 무응답 제외한 결과임

□ 가구의 자산분위별 부채 규모를 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가구의 자산분위별 가구 총부채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자산1분위	3,180	5,514	2,000
2분위	4,377	3,896	4,000
3분위	6,628	5,118	6,000
4분위	9,091	6,081	8,000
자산5분위	18,713	21,091	13,000
전체(평균)	10,349	13,639	7,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로 대출유형을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대출로 구분해서 보면, 상용근로자의 금융기관대출은 평균 7,843만원, 비금융기관대출은 평균 144만원임.

〈표 4-21〉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금융부채 분포

(단위: 만원)

	금융대출 평균	비금융대출 평균	전체*
상용근로자	7,843	144	9,817
임시·일용근로자	4,443	335	6,098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13,861	188	18,56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7,956	169	9,646
무급가족종사자	6,327	309	7,255
비경제활동	5,585	349	9,518
전체(평균)	7,643	203	10,076

주: *전체는 기타 부채를 포함한 금액임

- 가구주의 연령별 순자산의 분포를 보면 가장 순자산이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약 3억 1천만원의 순자산, 그다음인 50대로 평균 약 2억 9천만원의 순자산 보유

〈표 4-2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9세이하	4,446	13,728	1,300
30-39세	17,888	20,384	12,500
40-49세	25,959	30,548	18,500
50-59세	29,369	39,086	19,100
60-69세	31,283	40,833	20,000
70세이상	25,071	37,094	15,000
전체(평균)	24,237	33,908	15,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지역별로 순자산 규모가 달라지는데 수도권이 평균 약 2억 9천만원, 광역시 약 2억 3천만원, 도지역 약 1억 7천만원의 순자산 보유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가장 평균 순자산이 많은 가구주 연령은 60대이지만 두번째가 70대, 세번째가 50대로 모두 3억을 상회
- 광역시와 도지역에서는 60대, 50대, 40대, 70대 순으로 평균 순자산 보유액이 높음

〈표 4-23〉 수도권거주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9세이하	5,763	18,008	2,000
30-39세	20,054	24,050	13,000
40-49세	31,141	34,461	23,000
50-59세	35,420	46,815	23,000
60-69세	39,992	50,680	26,000
70세이상	37,393	51,469	23,000
전체(평균)	29,611	41,053	18,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순자산 규모는 소득분위가 높았던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가 가장 순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나타나서 소득분위와는 차이가 있음

〈표 4-2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24,963	29,726	17,000
임시·일용근로자	10,947	18,855	5,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0,376	57,708	35,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5,955	29,722	18,500
무급가족종사자	24,097	25,954	16,000
비경제활동	22,734	39,161	10,500
전체(평균)	24,237	33,908	15,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순자산 규모에 차이가 있음
- 수도권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가 가장 순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상용근로자 순임

〈표 4-25〉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29,545	35,623	20,000
임시·일용근로자	12,628	21,292	4,7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9,439	66,569	42,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0,831	32,679	22,000
무급가족종사자	36,662	38,070	20,000
비경제활동	31,563	51,374	14,000
전체	29,611	41,053	18,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광역시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상용근로자 순임

〈표 4-26〉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23,784	23,396	19,000
임시·일용근로자	9,917	13,542	5,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0,722	47,786	38,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6,152	29,998	21,000
무급가족종사자	17,136	15,340	20,000
비경제활동	19,541	26,380	12,600
전체	22,995	27,505	17,0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도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평균 순자산 규모가 컸음.

〈표 4-27〉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17,208	17,572	13,900
임시·일용근로자	8,667	16,976	5,4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32,088	40,570	23,5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1,878	26,260	16,500
무급가족종사자	20,436	19,394	15,000
비경제활동	13,450	21,910	8,500
전체	17,019	22,575	12,1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다. 일자리 유형별 소득 현황

- 월평균 가구소득을 소득 5분위로 하면, 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77만원,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91만원, 3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87만원, 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95만원,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12만원임.

〈표 4-28〉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소득분위별)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소득1분위	77	34	76
2분위	191	26	200
3분위	287	25	300
4분위	395	34	400
소득5분위	612	164	560
전체	316	198	300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4-29〉 소득분위별 가구자산 분포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소득1분위	13,265	20,366	8,000
2분위	18,280	25,836	10,500
3분위	24,405	26,585	18,000
4분위	30,693	29,539	24,000
소득5분위	53,449	57,616	37,000
전체	26,274	36,149	17,000

-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407만원,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월평균 510만원, 고용

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300만원 수준임.

〈표 4-30〉 가구의 일자리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단위: 만원)

가구의 일자리 유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상용근로자	407	171.9	385
임시·일용근로자	222	134.8	2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10	252.9	48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00	166.2	300
무급가족종사자	215	180.7	150
비경제활동	163	157.6	100
전체	291	201.3	270

□ 가구의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보면, 근로사업소득은 월평균 285만원이며, 재산소득 6만원, 사회보험수혜금 10만원, 정부보조금 9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임.

〈표 4-31〉 가구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만원)

가구의 일자리 유형	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 소득
상용근로자	388	3	2	4	1
임시·일용근로자	199	2	6	8	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484	14	3	4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8	6	6	7	2
무급가족종사자	197	4	17	15	9
비경제활동	79	14	31	19	20
전체	285	6	10	9	6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가구의 거주지역에 따라 월평균소득액에 차이가 있는데 근로사업 소득은 수도권에서 306만원, 광역시 284만원, 도지역 253만원 규모임.
- 재산소득은 수도권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지만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규모는 광역시와 도지역 거주가구의 수혜금액이 큼
- 평균 근로사업소득액은 광역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가 가장 높아서 522만원, 수도권(474만원), 도지역(467만원) 순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수도권(337만원), 광역시(322만원), 도지역(257만원) 순임.
 - 무급가족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수도권(283만원), 광역시 (187만원), 도지역(159만원) 순임.

〈표 4-32〉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
상용근로자	395	3	2	3	1
임시·일용근로자	210	2	6	6	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474	18	4	3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37	7	4	4	2
무급가족종사자	283	4	32	14	19
비경제활동	100	20	29	19	21
전체	306	8	9	7	6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4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4-33〉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 소득
상용근로자	390	3	2	6	1
임시·일용근로자	192	2	6	8	5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22	13	4	5	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22	6	5	5	1
무급가족종사자	187	0	15	12	2
비경제활동	72	11	36	19	21
전체	284	6	12	10	7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4-34〉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만원)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 소득
상용근로자	374	3	1	6	0
임시·일용근로자	184	2	6	10	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467	8	3	5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57	5	8	11	2
무급가족종사자	159	3	10	15	4
비경제활동	55	8	31	20	19
전체	253	5	11	11	6

주: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제4절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추정

가. 지역가입자 선정

- 주거실태조사의 조사가구는 가구주의 건강보험자격유형에 대한 직장/지역가입자 유무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역가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면, 이를 제외한 일자리 유형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모두 지역가입자로 간주함.

지역 가입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제외 -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등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
분석 대상자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 실거주자 및 전월세 거주자 포함 - 다주택자,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 제외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 산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가정 및 산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4-1]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 산출을 위한 가정

재산점수 산정	- 조사의 재산규모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산정
세대수 분포 적용	- 1주택실거주자, 주택이 없는 전월세거주자의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비율 적용 - 1주택 세대 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 수 × (가계금융복지조사) 1주택실거주자의 비율(%) - 전월세 세대 수=건강보험 재산점수별 세대수 ×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월세거주자의 비율(%)
자산규모 산출	- 전체 자산=거주주택자산+거주주택이외부동산+기타 실물자산 - 재산기본공제 적용 - 1주택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택 현가격 기준 주택과세표준=주택현가격×0.7×0.6 - 전월세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월세 보증금 기준 전월세=(보증금+(월세×0.4)×0.3-재산기본공제
부채규모 산출	- 대출용도=주택구입 & 거주주택 담보 - 대출용도=전월세 보증금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특성가구의 분포와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가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58%로 높으며 도지역이 25.3%임

○ 대상가구의 규모는 수도권 약 천만가구, 도지역 약 460만가구, 광역시 302만가구 규모임

○ 1주택자가 885만가구, 월세가구가 558만가구, 전세가구가 약 372만가구로 전체 약 1,815만가구임

〈표 4-35〉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지역별 규모와 분포

(단위: 만가구, %)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합계
1주택자	규모(가구수)	435.9	207.9	241.0	884.8
	비율	49.3	23.5	27.2	100.0
전세	규모(가구수)	224.4	47.3	100.4	372.1
	비율	60.3	12.7	27.0	100.0
월세	규모(가구수)	393.1	46.7	118.1	558.0
	비율	70.5	8.4	21.2	100.0
합계	규모(가구수)	1,053.5	301.9	459.5	1,814.9
	비율	58.0	16.6	25.3	100.0

주: 1) 1주택자는 주거실태조사상 자가이면서 다른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함
 2)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23.1%, 40대가 21.6%, 30대가 17.6%임

〈표 4-36〉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규모와 분포

(단위: 만가구, %)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규모(가구수)	159.4	319.9	392.2	419.2	281.0	243.2	1814.9
비율	8.8	17.6	21.6	23.1	15.5	13.4	100.0

주: 1) 1주택자는 주거실태조사상 자가이면서 다른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함
 2)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가구의 가구주 일자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약 45%), 비경제활동(23.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15.4%), 임시일용근로자(11.5%),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4.7%) 순임

〈표 4-37〉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규모와 분포

(단위: 가구, %)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	가구수	비율
상용근로자	814.1	44.9
입시·일용근로자	209.5	11.5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84.7	4.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79.6	15.4
무급가족종사자	3.2	0.2
비경제활동	423.7	23.3
전체	1,814.9	100.0

주: 1) 1주택자는 주거실태조사상 자가이면서 다른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함
 2)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분포를 살펴 보면 29세 이하는 자산 1분위가 66.9%임.

〈표 4-38〉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자산 분포

(단위: %)

	자산 1분위	자산 2분위	자산 3분위	자산 4분위	자산 5분위	합계
29세이하	66.9	21.7	7.5	2.7	1.2	100.0
30-39세	17.4	21.0	26.5	22.3	12.8	100.0
40-49세	14.9	16.6	22.6	25.1	20.9	100.0
50-59세	17.4	18.3	21.0	21.6	21.6	100.0
60-69세	14.7	19.1	23.5	21.0	21.7	100.0
70세이상	14.2	29.2	23.8	16.6	16.2	100.0

주: 1) 1주택자는 주거실태조사상 자가이면서 다른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함
 2)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가구의 가구주 일자리 유형별 자산분포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순자산 분포와 유사하게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가구,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구, 무급가족종사자의 자산분위가 높음.
- 임시일용근로자와 비경제활동가구의 자산분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음

〈표 4-39〉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자산 분포

(단위: %)

	자산 1분위	자산 2분위	자산 3분위	자산 4분위	자산 5분위	합계
상용근로자	14.3	18.4	24.5	24.3	18.5	100.0
임시·일용근로자	43.8	26.8	15.7	8.6	5.0	100.0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4.7	8.0	14.4	26.2	46.8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9.6	20.9	28.0	23.8	17.6	100.0
무급가족종사자	4.6	29.8	28.4	14.7	22.5	100.0
비경제활동	30.9	22.6	17.3	14.0	15.3	100.0

주: 1) 1주택자는 주거실태조사상 자가이면서 다른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함

2) 무응답 제외,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지역가입자로 가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점수 등급별 1주택자 및 전월세자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주택자의 경우 40등급이하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29등급이하로 분포되어 있음.

146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4-40〉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및 세대 분포: 주거실태조사 결과

(단위: 세대)

등급	1주택 및 전월세자			다주택 및 기타부동산소유자			계
	1주택	전세	월세	1주택	전세	월세	
-	161,708	241,756	2,590,310	13,994	3,084	15,038	3,025,889
1	55,941	5,047	45,288	2,117	0	3,038	111,430
2	81,749	111,938	146,795	9,283	372	4,793	354,928
3	161,757	100,079	80,962	10,040	2,883	8,862	364,583
4	123,471	78,545	28,973	23,178	527	5,342	260,036
5	32,281	21,643	5,221	6,825	0	469	66,439
6	182,360	46,285	19,851	14,849	2,012	9,382	274,738
7	208,228	45,254	13,392	23,432	1,215	5,403	296,925
8	121,459	21,520	8,794	19,050	1,555	6,696	179,074
9	272,572	39,225	2,547	64,359	2,071	4,853	385,627
10	60,740	11,900	3,292	28,874	3,211	17,053	125,069
11	0	27,138	119	0	0	0	27,257
12	277,103	33,142	935	28,844	3,709	4,848	348,581
13	77,226	13,859	2,142	30,258	2,068	5,316	130,870
14	314,897	11,877	879	92,374	1,443	11,364	432,835
15	226,104	21,223	864	54,057	2,293	12,440	316,981
16	268,014	14,687	-	57,527	3,444	9,660	353,331
17	106,296	9,458	455	100,603	6,688	11,027	234,526
18	302,151	11,040	1,144	46,516	10,090	12,699	383,640
19	161,008	6,189	536	67,839	5,655	9,272	250,499
20	209,685	4,069	2,086	80,206	6,578	12,363	314,988
21	176,896	3,268	-	80,802	8,162	9,487	278,615
22	65,894	725	-	39,944	7,805	7,427	121,794
23	154,346	900	-	70,098	8,702	4,903	238,948
24	80,918	783	-	47,094	4,449	4,177	137,421
25	126,342	468	477	63,478	4,976	6,953	202,693
26	124,727	259	-	74,072	8,375	4,572	212,004
27	34,857	1,849	-	23,338	5,420	3,420	68,883
28	58,642	368	-	29,242	5,073	5,136	98,462
29	65,917	244	-	34,339	7,211	3,056	110,766
30	41,774	-	-	24,965	3,217	1,328	71,284
31	31,916	-	-	35,136	2,427	2,725	72,205

〈표 4-40〉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및 세대 분포: 계속

등급	1주택 및 전월세자			다주택 및 기타부동산소유자			계
	1주택	전세	월세	1주택	전세	월세	
32	7,531	-	-	31,022	5,264	1,280	45,098
33	10,347	-	-	22,214	3,612	2,375	38,547
34	9,771	-	-	10,921	1,496	212	22,400
35	6,294	-	-	17,260	217	902	24,672
36	9,520	-	-	11,241	1,718	1,636	24,115
37	6,732	-	-	3,522	1,660	0	11,914
38	5,474	-	-	9,360	1,597	870	17,301
39	5,914	-	-	7,516	585	66	14,081
40	494	-	-	3,786	290	0	4,570
41				6,276	0	269	6,545
42				1,446	148	0	1,593
43				3,150	144	133	3,427
44				1,011	0	0	1,011
45				381	0	0	381
46				2,017	0	152	2,169
47				1,692	0	0	1,692
48				222	0	0	222
49				0	0	255	255
50				194	0	123	317
51				446	322	0	768
52							
53							

□ 지역가입자 중에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평균 자산분포를 산출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음.

148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4-41〉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자산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단위: 만원)

등급	1주택 및 전월세자(세대수)			재산(만원)		
	1주택	전세	월세	주택과세표준	전세보증금 평가액	월세보증금 평가액
-	167,655	250,646	1,805,840	0	0	0
1	60,996	5,503	49,380	410	412	403
2	117,894	161,431	211,700	773	651	643
3	157,785	97,621	76,895	1,221	1,096	1,100
4	120,088	76,393	28,179	1,642	1,558	1,563
5	30,972	20,765	5,010	2,214	1,850	1,930
6	118,378	30,046	12,886	2,470	2,480	2,455
7	110,353	23,983	7,097	2,892	2,998	2,928
8	93,714	16,604	6,785	3,308	3,389	3,383
9	93,631	13,474	875	3,705	3,911	3,738
10	59,178	11,594	3,207	4,144	4,306	4,278
11	-	42,251	185	4,144	4,760	4,600
12	114,413	13,684	386	5,228	5,407	5,248
13	85,170	15,285	2,362	5,878	5,986	6,010
14	116,426	4,391	325	6,426	6,476	6,700
15	116,160	10,903	444	7,378	7,178	7,499
16	125,176	6,860	0	8,291	8,342	7,499
17	72,509	6,452	310	9,092	9,193	9,173
18	132,889	4,855	503	10,186	9,981	10,272
19	97,599	3,751	325	11,332	11,343	11,707
20	98,139	1,904	976	12,591	12,769	12,730
21	85,888	1,587	0	14,210	14,232	12,730
22	67,684	744	0	15,693	15,650	12,730
23	81,965	478	0	17,025	17,132	12,730
24	69,182	669	0	19,142	19,000	12,730
25	68,027	252	257	21,230	20,500	20,620
26	61,531	128	0	24,529	23,500	.
27	48,691	2,582	0	26,913	26,500	.
28	53,985	339	0	29,408	29,500	.
29	50,508	187	0	33,010	32,500	.

〈표 4-41〉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자산 분포: 계속

등급	1주택 및 전월세자 세대수			재산(만원)		
	1주택	전세	월세	주택과세표준	전세보증금 평가액	월세보증금 평가액
30	43,898	-	-	37,014	-	-
31	31,598	-	-	41,679	-	-
32	10,761	-	-	46,119	-	-
33	16,095	-	-	50,417	-	-
34	24,787	-	-	56,163	-	-
35	12,562	-	-	62,918	-	-
36	18,083	-	-	69,887	-	-
37	23,329	-	-	76,787	-	-
38	12,075	-	-	84,634	-	-
39	16,991	-	-	95,080	-	-
40	3,224	-	-	113,400	-	-
41						

□ 지역가입자 중에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평균 부채분포를 산출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재산점수 10등급에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는 가구 중에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약 32%,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25%에 해당됨.

15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표 4-42〉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부채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단위: 만원)

등급	평균 부채액			자산대비 부채보유 세대수 비중		
	1주택	전세	월세	1주택	전세	월세
-	6,922	3,132	3,130	0.33	0.07	0.09
1	1,329	3,132	3,767	0.03	0.00	0.11
2	1,689	3,315	3,782	0.07	0.08	0.17
3	1,496	4,699	6,179	0.10	0.17	0.25
4	1,935	5,070	6,488	0.12	0.27	0.31
5	2,231	5,219	7,239	0.21	0.25	0.27
6	2,030	6,378	7,208	0.18	0.22	0.25
7	2,468	6,089	5,842	0.20	0.23	0.36
8	2,924	5,239	6,371	0.24	0.32	0.43
9	2,799	6,419	5,000	0.19	0.33	0.14
10	2,933	6,550	7,904	0.32	0.25	0.20
11	2,933	7,719	7,904	0.27	0.27	0.00
12	3,831	7,810	8,000	0.32	0.25	0.25
13	4,264	10,556	8,000	0.28	0.44	0.00
14	4,498	7,617	8,000	0.35	0.29	0.00
15	5,293	8,417	5,000	0.32	0.21	0.50
16	6,050	8,065	5,000	0.38	0.20	-
17	6,065	12,520	5,000	0.34	0.29	0.00
18	7,103	12,732	5,000	0.37	0.21	0.00
19	7,029	15,679	5,000	0.36	0.35	0.00
20	8,192	27,657	21,319	0.36	0.25	0.40
21	8,587	10,000	-	0.43	0.20	-
22	7,070	10,000	-	0.38	0.00	-
23	9,064	20,000	-	0.44	0.33	-
24	8,540	-	-	0.44	0.00	-
25	11,809	-	-	0.41	0.00	0.00
26	11,841	-	-	0.35	0.00	-
27	11,714	-	-	0.35	0.40	-
28	11,516	-	-	0.42	1.00	-
29	14,724	-	-	0.40	0.00	-

〈표 4-42〉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부채 분포: 계속

등급	평균 부채액			자산대비 부채보유 세대수 비중		
	1주택	전세	월세	1주택	전세	월세
30	16,225	-	-	0.40	-	-
31	20,578	-	-	0.46	-	-
32	29,763	-	-	0.50	-	-
33	19,450	-	-	0.33	-	-
34	32,468	-	-	0.41	-	-
35	20,832	-	-	0.26	-	-
36	15,062	-	-	0.40	-	-
37	20,964	-	-	0.06	-	-
38	40,000	-	-	0.26	-	-
39	47,325	-	-	0.00	-	-
40		-	-		-	-

□ 앞서 제시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산등급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자 규모, 보유 부채 규모 등의 현황을 추정, 건강보험료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투입변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 규모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함.

라. 분석 결과

- 공시지가 6억원을 기준하였을 때, 담보대출을 공제한 이후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약 2천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4-43〉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기준모형	1,622,543	31,413	2,684	1,656,640
변경후 모형	1,425,755	28,057	2,413	1,456,225
				-200,415

주: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하였을 때에, 담보대출을 공제한 이후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약 2천 16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4-44〉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현모형	1,622,543	31,413	2,684	1,656,640
공제후 모형	1,424,588	28,057	2,413	1,455,057
차이				-201,582

주: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제1절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제2절 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조사 방법



제 5 장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제1절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그림 5-1]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지역가입자의 대상자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구입: 1가구 1주택 (부부합산) ② 주택임대: 전월세 임대자 +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주택 실거주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제 거주 판단불가: 주민등록주소(도로명주소)와 물건지주소(지번)의 수작업 매칭이 필요하나, 현장적용 시 어려움 예상
주택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면적기준) 국민주택 85㎡(수도권), 100㎡(수도권 이외) 이하 ② (금액기준) 기준금액(예, 공사차가, 실거래가 등) 및 상한액 설정 여부, 기준금액의 변동성 인정여부(예, 대출당시 또는 매년 공사차가 반영 등) ③ (두 개의 기준) 면적기준+금액기준
대출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출상품 중 주택담보대출 한정 여부(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회사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 2금융권 인정) '금융회사 등'에 대한 범위 설정 ※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3호)
부채 평가 방법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산) 현행 재산과표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재산과표 적용: 부채×60% ② (전월세)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부채×30%

가. 지역가입자의 대상자 범위

□ 지역가입자 대상자

- '1가구 1주택'의 개념(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개념)을 ⇒ 주민등록 기준 '1세대 1주택(부부합산의 개념)'으로 변경
 - ※ 1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건보공단 확인 불가
-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주택만 보험료 산정 특례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 지역가입자 중에 1세대 1주택을 포함하되, 이 중에서도 토지, 상가, 선박의 자산 미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재산보험료 중 주택만 보험료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활동에 필수적인 자산(토지, 상가, 선박, 자동차)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 지역가입자와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나. 주택실거주 목적

□ 주택 구입(임차)에 따른 실거주 목적의 확인 방법

-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중 건축물(건물·주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세 목적으로 지분 현황으로 관리하는 과세자료가 아닌 건축물 등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매칭해야 함.

- 행정자료로 제공받는 개인식별자료(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연계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식별번호'(건축물관리번호) + 재산세 자료 상 '납세자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 이 경우, 건축물 등기자료(대법원 등기부등본, 지자체의 건축물관리대장)와 재산세 과세자료의 주소지관리체계가 일부 상이하여 불일치 자료 문제 발생
 - 예를 들어, 등기자료는 법정동 주소 기준, 재산세 자료는 행정동 주소 기준으로 관리하며, APT의 동·호 등 주소 세부단위의 관리방식이 상이
- 주택 실거주 판별을 위한 행정비용 소요
 - 주민등록주소(도로명주소)와 물건지주소(지번)의 주소체계가 상이하여 수작업 매칭 필요
- (참고) 국세청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택 실거주에 관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의 경우(단,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
 - 공제한도: 상환기간 10~15년이면 한도 300만원, 15년이상이면 500만원~18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

○ 필요발급서류

- 금융회사 발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구분	내용
공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차입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차입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¹⁹⁾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 제외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19)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주택 양수인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그림 5-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용도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 년도 (기준월)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는 특례 내용

차입금 인정 요건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신규차입금의 경우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양수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 중에 최초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의 차입금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외의 경우 85㎡, 수도권 이외는 100㎡이하가 해당됨.

- ① (면적기준) 국민주택 85㎡(수도권), 100㎡(수도권 이외) 이하
- ② (금액기준) 기준금액(예,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및 상한액 설정 여부, 기준금액의 변동성 인정여부(예, 대출 당시 또는 매년 공시지가 반영 등)
- ①면적 기준 또는 ②금액 기준 또는 ③면적 기준과 금액 기준을

동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민주택규모: 주택법 제2조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시기금(이하 "주택도시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주택법

□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로 금융부채 인정을 한정할 경우에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금융부채 감면 적용을 받는 규모가 축소됨.

○ 다만, 주택규모가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적음.

〈표 5-1〉 분석결과: 5천만원 재산기본공제 반영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차이
재산 9억기준	기준모형	1,549,182	30,482	2,595	1,582,260	
	85미만 모형	1,568,626	30,886	2,687	1,602,199	19,939
재산 6억기준	기준모형	1,549,489	30,482	2,595	1,582,567	
	85미만 모형	1,569,734	30,886	2,687	1,603,307	20,740

주: 기준모형=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자료: 주거실태조사 DB에 적용한 모형의 결과임.

□ 부채 평가 방법은 1주택자 60%, 전월세자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율을 달리한 경우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 분석결과: 재산9억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1주택	전세	월세	계	
부채율 적용 기본모형 (1주택=60%, 전월세=30%)		2,335,495	185,988	55,638	2,577,120	
1주택	전월세					차이
20%	20%	2,453,939	189,770	56,042	2,699,751	122,631
50%	50%	2,365,974	171,679	41,658	2,579,311	2,191
50%	20%	2,365,974	189,770	56,042	2,611,786	34,666
70%	70%	2,292,426	152,321	36,003	2,480,751	-96,369
70%	30%	2,292,426	185,988	55,638	2,534,052	-43,068
50%	60%	2,365,974	160,415	40,289	2,566,678	-10,442

주: 기준모형=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자료: 주거실태조사 DB에 적용한 모형의 결과임.

라. 주택담보대출유형

□ 주택을 담보로 한 여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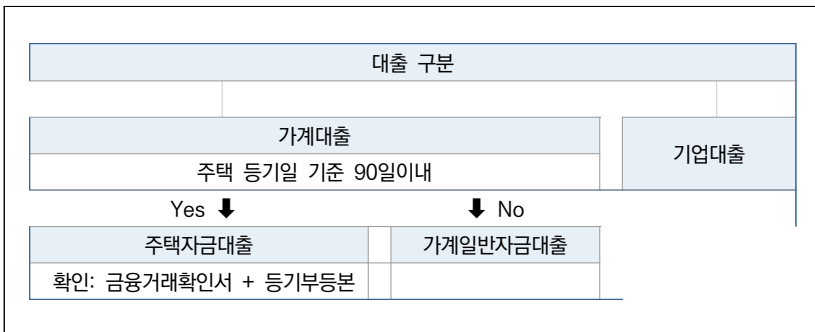
- 가계자금대출과 기업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계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일반생활비를 위한 가계일반자금대출과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자금대출로 구분됨.

〈표 5-3〉 여신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가계자금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	가계일반자금(주택담보대출)
		가계일반자금(기타부동산담보대출)
		가계일반자금(기타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기타부동산담보대출)
		주택자금(기타담보대출)
		주택자금(기타대출)
	가계당좌대출	가계당좌(주택담보대출)
		가계당좌(기타부동산담보대출)
		가계당좌(기타담보대출)
가계당좌(기타대출)		
기업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주택운전자금대출
		주택시설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또는 등기일을 기준하여 9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5-3]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인정의 기준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거래확인서에는 주택담보와 관련한 대출유형(주택담보대출), 감정가액, 소재지, 건물면적이 기재되며, 대출금 거래 현황에 대한 내용 즉, 대출일자 및 대출잔액 등을 포함함.

〈표 5-4〉 금융거래확인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담보현황	대출유형(주택담보), 감정가액, 소유자, 소재지, 대지 및 건물 면적 등
대출금 거래상황	종류(주택자금대출), 용도, 대출일자, 대출잔액, 상환기일 등

주: ※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주택구입과 관련한 대출 유형
 - 부채(대출) 목적이 주택구입인지에 대한 확인 가능 여부
 - 주택담보대출이외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방법으로 신용대출 등이 있으나, 대출의 용도 측면에서 주택구입관련 대출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
 -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형태가 있으나, 주택이외 사용한 경우 인지에 대한 실제 용도는 확인하기 어려움.
 - (구입 및 임차)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실제로 주택 구입 및 임차에 활용하더라도 실제 용도는 확인하기 어려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인정하는 부채의 범위

- 부채의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

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신용대출)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연봉이나 신용등급·부채내역 등을 고려해서 대출한도 및 금리가 결정
 - (담보대출) 재화로 환산이 가능한 물리적 물건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부동산(토지·건물 등)과 자동차 등이 담보물에 해당이 되며,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담보물의 60%
 - 마이너스대출(마이너스통장)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보험대출) 일명 보험약관대출이라고 불리며, 보통 자신의 보험 불입금의 50% 한도 내에서 받는 대출(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담보)
 - (주식대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금융회사 이외 기관의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

가 증명한 부채, 한국해비타트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인의 회해
 -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 차감금액

- 전액차감: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일부차감: 금융회사외 기관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는 부채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부채의 용도: 의료비/학비/주거/일반부채

□ 등기일기준 90일 이내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인정할 경우에 예외 사항: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자금 대출의 경우

○ 사례) 3억원의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준 이후에 2년이 경과해서, 본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 “가계 일반자금대출” (생활자금, 임대차반환)유형으로 분류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내에 가계자금대출 범위 인정을 할 것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계일반자
금대출로 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금융회사 범위

- 금융회사는 1, 2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3금융권이 있음.
 - 제1금융권: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표 5-5〉 금융회사의 범위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성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1,2금융권만 포함할 경우

- (장점)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연계만으로 업무처리 및 민원 상담 가능, 직원 업무부담 감소
- (단점) 타 금융권 대출 보유자와의 보험료 공제 형평성 논란 발생

-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 금융중개회사'에서의 가계대출은 약 11.9%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3금융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용도에 대출금이 사용되었는지 입증의 어려움.

〈표 5-6〉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2020년 기준

(단위: 십억원, %)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소계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가계주택담보대출	가계기타대출			
583,897	265,973	95,745	228,081	1,173,695	457,785	1,631,480
49.7	22.7	8.2	19.4	100.0	-	-
-	-	-	-	71.9	28.1	100.0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기타	기타금융기관(소계)
120,613	15,427	70,680	44,751	194,652	11,663	457,785
7.4	0.9	4.3	2.7	11.9	0.7	28.1

주: 예금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비은행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증권사, 대부업체 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접속일자: 2020.7.9.)

□ 1,2금융권 + 3금융권(대부업체) 포함할 경우

- (장점) 보험료 공제 형평성 논란 감소
- (단점) 일부 대부업체의 전산연계자료 부재
 -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1,416개)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

으로부터 전산연계 가능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약 8,900개)의 자료는 전산연계가 불가능함.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포함하는 금융권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제1, 2금융권뿐 아니라 3금융권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기타 의료비·학자금·생계비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부채이며, 생활형편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담보 및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금융권 이외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순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에서 기인함.

바. 부채 평가방법

□ 부채 평가가 필요한 사유

○ 보험료에 적용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또는 70%)이나 대출금은 재산 시가(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되어 단순 차감할 경우 마이너스 재산 과표가 발생

○ 예) 시세가 1억원인 주택을 6천만원의 대출(일반적 대출한도 시세의 60%)을 받아서 구매한 경우 개인 소유의 주택가치는 4천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재산과표는 시가표준액 8천만원(시세의 약 80%)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인 4.8천만으로 대출 6천만원을 단순 차감할 경우 -1.2천만원의 과표가 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례)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면적)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부채 차감 시 재산가액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여 이 경우 재산환산액을 0원으로 처리

□ 평가 방법

- 재산 및 전월세 평가 방식을 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
 - 재산: 공정시장가액×60%
 - 전월세: [보증금+(월세×40%)]×30%
- 부채상환에 따라 보험료의 부채 적용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움

사. 부채 공제 방식

- 재산공제 방식 여부와 연계
- 부채 상환 시, 부채환산액만 다시 공제할지 또는 공제금액을 재산정할지 여부

아. 기타

- 비주택 담보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
- 대출 용도 및 규모 제한에 따른 역차별 문제
- 건강보험료 회피를 위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유발 또는 후순위 대출상환 등의 문제

□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보다는 부채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10% ~ 30% 수준의 구간별로 경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고 있는 부채

- 재산보험료 부과요소 중 전월세 금액에 제한적으로 부채를 차감
-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월세금 인상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 시 인상분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인정

※ 전(월)세 세대부담완화 기준 관련 부채 공제

구분	내용
부채공제	동일 주소지에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생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신청주의	부채공제 신청과 부채사실입증은 가입자에게 있음 ※ 부채 사실 입증 서류: 부채 확인용 입증서류는 부채증명원, 부채잔액 증명원,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용자확인서 등
부채인정 금융기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출금 •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회의 대출금 ※ 공제 대출금 예시: 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공제조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공제회, 연기금공제, 대한공제회, 안전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등 •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에서 확인된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부채인정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 전 1개월부터 시작일 후 3개월까지의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 단, 재판상 “전세자금 충당을 위한 부채”로 확인된 경우 부채발생일로 소급하여 공제하되, 당해 전(월)세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음 ※ 대출시기 제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용도(전(월)세 인상액 충당) 확인 곤란 • 전세자금 대출기한이 전월세 계약 개시일 후 3개월 내로 규정 • 다만, 위 기간 이외 기간에 발생한 부채이더라도 대출용도가 해당 전(월)세금 인상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면 공부상 자료에 대출목적의 전(월)세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 단, 카드회사 및 보험회사 대출 중 전세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인정 •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등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갹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 금액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공제 • 공제기간: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 발생된 계약기간만 부채공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5조

제2절 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조사 방법

-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주택 재산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공제하려면, 해당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관련 자료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대출금 상환 현황 확인에는 한계가 있음.
- 재산가액에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채유형의 인정(조사)과 부채 잔액 확인, 재산 부과자료의 조정 및 정산에 소요되는 인력 및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
- 재산세 과표 자료를 확보하고 소유권 변동자료를 연계하여 반영하는 시점에서의 차이가 2~3개월 발생하게 되므로, 시점별로 개인의 대출잔액을 매월 확인하여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로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자료를 연 1회 확보하여 부과에 적용(매년 11월)하고 소유권 자료는 전월 변동기준으로 당월 보험료 산정 이후 확보하여 익월 반영
- (금융부채 확인 여건의 부재) 금융대출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행정안전부의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마이데이터의 활용

- 정보주체인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정보활용에 대한 결정권을 제공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정보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 적용을 위한 운영방식 도출을 위한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임대보증금 부채) 해당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단, 임대보증금의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다른 재산 취득 등 이중 반영 여부 검토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 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
 -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금융정보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내역을 확인

• 단,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로 확인. 6개월단위로 대출내역 변동사항 재확인

•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하며,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함.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 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부채차감순서: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차감 제외 부채 유형)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되는 경우(신청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

을 부채로 산정(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 120~130%로 설정 됨)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준 부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 변준석·윤병우, 2020,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가계부채와 주택특성 분석 및 통계 개발연구, 통계개발원.
- 변세일, 박천규, 오민준, 정경석, 조정희, 권건우, 전성제, 이운상, 방보람, 2018,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연구(I) - 지역별 수요 대응 주택공급 방안 -. 세종: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각년도.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통계청, 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18.12.20 보도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홈페이지(<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2021년 7월 15일 검색)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2021년 7월 14일 검색)
- 대한민국법원등기정보광장 (<https://data.iros.go.kr/cm/mi/selectMain.do>) (2021년 7월 14일 검색)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2021년 7월 15일 검색)
- 부동산통계정보(R-ONE) 홈페이지(<http://www.r-one.co.kr/>)(2021년 7월 15일 검색)
- 주택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khug.or.kr/index.jsp?mainType=housta>) (2021년 7월 15일 검색)
- 씨:리얼홈페이지(<https://seereal.lh.or.kr/main.do>)(2021년 7월 15일 검색)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2021년 7월 15일 검색)

180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방안 연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2021년 7월 14일 검색)

e-나라지표 체계 부처별 지표체계(www.index.go.kr)(2021년 7월 15일 검색)